안산신길2지구 B-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공급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내 B-1블록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387세대 (전용면적 74㎡ 80세대, 84㎡ 307세대)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 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시, 신청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청약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 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부적격 처리 혹은 불이익 부과) 되며,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자격상향지원 등)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세대 1인 및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사전청약 당첨자 및 기관추천 확정대상자 등은 불가),**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계약자의 자금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본 주택의 첫 중도금 납기를 감안하여 금융기관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협약체결이 완료되는 대로 계약자에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 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30.(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533**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타입)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각 주택형(타입)별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한 주택형(타입)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 **주택전시관 관람 안내**

- 주택전시관 개관은 '26.10.30.(금) 13:00 입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 안산신길2 B-1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전시관을 ['26.10.30.(금) (13:00~17:00) , 10.31.(토) (10:00~17:00)] 2일간 사전공개합니다.**
- **[중요] 주택전시관 내 견본주택은 안산신길2 B-1블록 84B, 84D 타입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74A,84A,84G,84H,84I,84J)은 반드시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전시관 관람이 어려울 경우에도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 참고)**

*** 주택전시관 관람 안내**

대 상	구 분	관람 일정	주 소	기 타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관람** (일반고객 관람 불가)	'26.10.30.(금) (13:00~17:00) '26.10.31.(토) (10:00~17: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LH 수원 주택전시관(2관)	* 기간 내 주말, 공휴일 관람 가능 * 관람 및 상담 시 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차공간 협소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문의 : ☎ 031-297-0311**
일반고객 (사전청약 당첨자 포함)	일반관람	'26.11.01.(일) ~ 11.07.(토) (10:00~17:00)		
사이버 견본주택	www.lhasg2-b1.co.kr			

- **청약 전 반드시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내 실제 건립세대 촬영 영상 및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실물 견본 세대를 관람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www.lhasg2-b1.co.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6.10.30. 17:00 오픈 예정)

■ 본 단지에 'ANDANTE' 단독 또는 'ANDANTE+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 특성 및 입주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26~’27년)

공 고	접 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예비자) 서류접수 (방문접수)	선택품목 결정	계 약	
	사전청약 당첨자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1순위자), 추첨공급)				전자	현장
	주택형(타입) 선호순위 선택	주택형(타입) 배정결과 발표	본청약 신청 포기							
‘26.10.30. (금)	‘26.11.9.(월) 10:00 ~11.10.(화) 17:00	‘26.11.11.(수) (14:00)	‘26.11.12.(목) 10:00 ~ 11.13.(금) 17:00	‘26.11.16.(월) 10:00 ~11.17.(화) 17:00	‘26.11.18.(수) (10:00~17:00)	‘26.11.30.(월) (17:00)	‘26.12.4.(금) ~ 12.8.(화) (10:00~16:00)	‘27.3.4.(목) 10:00 ~ 3.5.(금) 17:00	‘27.3.15.(월) ~ 3.16.(화) (10:00~16:00)	‘27.3.17.(수) ~ 3.18.(목) (10:00~16: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사전청약 당첨자,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대상자는 접수기간 중 야간(17:00~10:00)에도 청약 가능함							주택전시관(2관) (금곡동 1149)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주택전시관(2관) (금곡동 1149)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LH 수원 주택전시관(2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타입) 선정 참관(‘26.11.11 오전11시 예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LH 수원주택전시관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6인)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접수일정)** 공급유형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공급유형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 **(인터넷청약)**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시 인증이 필요하오니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받으시거나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인증 : 네이버, 토스, KB, 신한, 카카오톡, 삼성패스, NH, 하나, 우리, 뱅크샐러드, 통신사PASS, IBK, 카카오뱅크 총 13종, 이하 ‘간편인증 13종’**)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KB부동산 웹/앱을 통해서도 청약신청 및 신청내역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접속경로 : KB부동산 웹/앱 접속 → 메뉴 → 공공주택 → LH청약전용관)**

■ **(청약통장)** 종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6.10.29.)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2조제2호의 경우 신청 가능)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 제34조에 의거 **안산시 1년 이상(2025.10.30.이전) 거주하는 신청자가 안산시 1년 미만(2025.10.31.이후)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25조, 제34조에 의거 **지역우선 공급기준(20페이지 표1)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 또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25.10.30.**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2) **‘25.10.30.**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신청자격별 검증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기준은 20페이지 Ⅱ. 신청기준(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및 25페이지 Ⅲ.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등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1순위자)	추첨공급
무주택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부적격당첨제한 등	세대구성원 *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제2호 외국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									
세대주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과거 주택소유이력	세대구성원 (사전청약 공고일부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대구성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입주자저축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철거민,지역균형발전 등 불필요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이상) ※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1순위자]**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이상) **[2순위자]** 신청자 본인(가입자)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이상)	**[1순위자]**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이상) **[2순위자]** 신청자 본인(가입자)
소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 200%)	해당없음		
자산 (부동산, 자동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해당없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20페이지 Ⅱ.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기간 내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청약과열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20페이지 Ⅱ.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참고)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에서 확인(세대원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호(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특례 및 출산특례 중복 적용은 불가하므로, 청약 신청 전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청약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 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사전청약지구)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전자계약)**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7.03.15(월)~2027.03.16(화) 10:00~16:00) 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거나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원하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수원 주택전시관(2관)(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에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or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 따라서, **현장계약 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포함)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계약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공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는 공사 「취업규칙」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선착순 수의계약 또는 명의변경으로 인한 공사 공급 부동산의 취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민법」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청약과열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20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 제3호)	10년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 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시 인증이 필요하오니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받으시거나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인증 : 네이버, 토스, KB, 신한, 카카오톡, 삼성패스, NH, 하나, 우리, 뱅크샐러드, 통신사PASS, IBK, 카카오뱅크 총 13종, 이하 '간편인증 13종'**)

■ **공급구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Ⅰ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안산신길2지구 B-1블록 : 공공분양주택 8층~20층, 7개동, 전용면적 85㎡이하 387세대 (사전청약 263세대, 특별공급 93세대, 일반공급 31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대지면적(㎡)	공급세대수										최고층수	1층세대수	입주예정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계)		계	사전청약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국가유공자	지역균형발전	기타특별				
B-1	합 계								387	263	12	12	19	4	25	6	3	12	31	20	18	'29.08 (예정)
	074.9400A	74A	74.9400	22.1985	10.0458	40.9993	148.1836	48.6565	80	52	2	3	5	1	6	1	1	3	6	20	4	
	084.7100A	84A	84.7100	25.0926	11.3555	46.3444	167.5025	55.0000	110	76	4	3	5	1	7	2	1	3	8	20	5	
	084.9800B	84B	84.9800	25.1726	11.3917	46.4922	168.0365	55.1753	112	78	3	3	5	1	7	2	1	3	9	20	5	
	084.8700D	84D	84.8700	25.1400	11.3770	46.4320	167.8190	55.1039	62	43	2	2	3	1	4	1	–	2	4	20	1	
	084.5300G	84G	84.5300	25.0393	11.3314	46.2460	167.1467	54.8831	6	5	–	–	–	–	–	–	–	–	1	8	1	
	084.4400H	84H	84.4400	25.0126	11.3193	46.1967	166.9686	54.8247	5	4	–	–	–	–	–	–	–	–	1	8	–	
	084.5400I	84I	84.5400	25.0422	11.3328	46.2514	167.1664	54.8896	4	3	–	–	–	–	–	–	–	–	1	7	–	
	084.9800J	84J	84.9800	25.1726	11.3917	46.4922	168.0365	55.1753	8	2	1	1	1	–	1	–	–	1	1	8	2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면적 등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모형, 팸플랫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 완료하여야 합니다.(사전청약 당첨자는 주택형(타입) 선호순위 선택 기간까지 제출 완료)

※ 각 주택형(주택타입)별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한 주택형(주택타입)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 84J 타입은 복층 구조입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29년 8월입니다.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및 납부 일정

■ 사전청약당첨자 대상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층별	구분	주택가격	계약금 5%	중도금 30%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8.04.13)	입주시	
074.9400 A (74A)	1층	기본형	471,350	23,567	141,405	231,378	75,000
		마이너스옵션	435,593	21,779	130,677	208,137	75,000
	2층	기본형	481,490	24,074	144,447	237,969	75,000
		마이너스옵션	445,733	22,286	133,719	214,728	75,000
	3층	기본형	491,620	24,581	147,486	244,553	75,000
		마이너스옵션	455,863	22,793	136,758	221,312	75,000
	4층	기본형	496,690	24,834	149,007	247,849	75,000
		마이너스옵션	460,933	23,046	138,279	224,608	75,000
	5층	기본형	501,760	25,088	150,528	251,144	75,000
		마이너스옵션	466,003	23,300	139,800	227,903	75,000
	6층~9층	기본형	506,830	25,341	152,049	254,440	75,000
		마이너스옵션	471,073	23,553	141,321	231,199	75,000
	10층~최상층	기본형	511,900	25,595	153,570	257,735	75,000
		마이너스옵션	476,143	23,807	142,842	234,494	75,000
084.7100 A (84A)	1층	기본형	549,280	27,464	164,784	282,032	75,000
		마이너스옵션	508,861	25,443	152,658	255,760	75,000
	2층	기본형	561,090	28,054	168,327	289,709	75,000
		마이너스옵션	520,671	26,033	156,201	263,437	75,000
	3층	기본형	572,900	28,645	171,870	297,385	75,000
		마이너스옵션	532,481	26,624	159,744	271,113	75,000
	4층	기본형	578,810	28,940	173,643	301,227	75,000
		마이너스옵션	538,391	26,919	161,517	274,955	75,000
	5층	기본형	584,720	29,236	175,416	305,068	75,000
		마이너스옵션	544,301	27,215	163,290	278,796	75,000
	6층~9층	기본형	590,620	29,531	177,186	308,903	75,000
		마이너스옵션	550,201	27,510	165,060	282,631	75,000
	10층~최상층	기본형	596,530	29,826	178,959	312,745	75,000
		마이너스옵션	556,111	27,805	166,833	286,473	75,000
084.9800 B (84B)	1층	기본형	540,010	27,000	162,003	276,007	75,000
		마이너스옵션	499,462	24,973	149,838	249,651	75,000
	2층	기본형	551,620	27,581	165,486	283,553	75,000
		마이너스옵션	511,072	25,553	153,321	257,198	75,000
	3층	기본형	563,240	28,162	168,972	291,106	75,000
		마이너스옵션	522,692	26,134	156,807	264,751	75,000
	4층	기본형	569,040	28,452	170,712	294,876	75,000
		마이너스옵션	528,492	26,424	158,547	268,521	75,000
	5층	기본형	574,850	28,742	172,455	298,653	75,000
		마이너스옵션	534,302	26,715	160,290	272,297	75,000
	6층~9층	기본형	580,660	29,033	174,198	302,429	75,000
		마이너스옵션	540,112	27,005	162,033	276,074	75,000
	10층~최상층	기본형	586,460	29,323	175,938	306,199	75,000
		마이너스옵션	545,912	27,295	163,773	279,844	75,000
084.8700 D (84D)	1층	기본형	550,320	27,516	165,096	282,708	75,000
		마이너스옵션	509,825	25,491	152,947	256,387	75,000
	2층	기본형	562,150	28,107	168,645	290,398	75,000
		마이너스옵션	521,655	26,082	156,496	264,077	75,000

주택형 (타입)	층별	구분	주택가격	계약금 5%	중도금 30%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8.04.13)	입주시	
	3층	기본형	573,990	28,699	172,197	298,094	75,000
		마이너스옵션	533,495	26,674	160,048	271,773	75,000
	4층	기본형	579,900	28,995	173,970	301,935	75,000
		마이너스옵션	539,405	26,970	161,821	275,614	75,000
	5층	기본형	585,820	29,291	175,746	305,783	75,000
		마이너스옵션	545,325	27,266	163,597	279,462	75,000
	6층~ 9층	기본형	591,740	29,587	177,522	309,631	75,000
		마이너스옵션	551,245	27,562	165,373	283,310	75,000
	10층~ 최상층	기본형	597,660	29,883	179,298	313,479	75,000
		마이너스옵션	557,165	27,858	167,149	287,158	75,000
084.5300 G (84G)	1층	기본형	559,070	27,953	167,721	288,396	75,000
		마이너스옵션	518,737	25,936	155,621	262,180	75,000
	2층	기본형	571,100	28,555	171,330	296,215	75,000
		마이너스옵션	530,767	26,538	159,230	269,999	75,000
	4층	기본형	589,130	29,456	176,739	307,935	75,000
		마이너스옵션	548,797	27,439	164,639	281,719	75,000
	5층	기본형	595,140	29,757	178,542	311,841	75,000
		마이너스옵션	554,807	27,740	166,442	285,625	75,000
	7층~ 8층	기본형	601,160	30,058	180,348	315,754	75,000
		마이너스옵션	560,827	28,041	168,248	289,538	75,000
084.4400 H (84H)	2층	기본형	570,490	28,524	171,147	295,819	75,000
		마이너스옵션	530,200	26,510	159,060	269,630	75,000
	3층	기본형	582,500	29,125	174,750	303,625	75,000
		마이너스옵션	542,210	27,110	162,663	277,437	75,000
	5층	기본형	594,510	29,725	178,353	311,432	75,000
		마이너스옵션	554,220	27,711	166,266	285,243	75,000
	6층, 8층	기본형	600,520	30,026	180,156	315,338	75,000
		마이너스옵션	560,230	28,011	168,069	289,150	75,000
084.5400I (84I)	3층	기본형	583,190	29,159	174,957	304,074	75,000
		마이너스옵션	542,852	27,142	162,855	277,855	75,000
	4층	기본형	589,200	29,460	176,760	307,980	75,000
		마이너스옵션	548,862	27,443	164,658	281,761	75,000
	6층, 7층	기본형	601,230	30,061	180,369	315,800	75,000
		마이너스옵션	560,892	28,044	168,267	289,581	75,000
084.9800 J (84J)	1층	기본형	567,010	28,350	170,103	293,557	75,000
		마이너스옵션	526,462	26,323	157,938	267,201	75,000
	3층	기본형	591,400	29,570	177,420	309,410	75,000
		마이너스옵션	550,852	27,542	165,255	283,055	75,000
	5층	기본형	603,590	30,179	181,077	317,334	75,000
		마이너스옵션	563,042	28,152	168,912	290,978	75,000
	7층	기본형	609,690	30,484	182,907	321,299	75,000
		마이너스옵션	569,142	28,457	170,742	294,943	75,000

■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대상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층별	구분	주택가격	계약금 10%	1차중도금 10%	2차중도금 10%	3차중도금 10%	4차중도금 10%	5차중도금 10%	6차중도금 10%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7.09.21)	('27.12.15)	('28.04.13)	('28.08.16)	('28.12.13)	('29.04.18)	입주시	
074.9400 A (74A)	1층	기본형	471,350	47,135	47,135	47,135	47,135	47,135	47,135	47,135	66,405	75,000
		마이너스옵션	435,593	43,559	43,559	43,559	43,559	43,559	43,559	43,559	55,680	75,000
	2층	기본형	481,490	48,149	48,149	48,149	48,149	48,149	48,149	48,149	69,447	75,000
		마이너스옵션	445,733	44,573	44,573	44,573	44,573	44,573	44,573	44,573	58,722	75,000
	3층	기본형	491,620	49,162	49,162	49,162	49,162	49,162	49,162	49,162	72,486	75,000
		마이너스옵션	455,863	45,586	45,586	45,586	45,586	45,586	45,586	45,586	61,761	75,000
	4층	기본형	496,690	49,669	49,669	49,669	49,669	49,669	49,669	49,669	74,007	75,000
		마이너스옵션	460,933	46,093	46,093	46,093	46,093	46,093	46,093	46,093	63,282	75,000
	5층	기본형	501,760	50,176	50,176	50,176	50,176	50,176	50,176	50,176	75,528	75,000
		마이너스옵션	466,003	46,600	46,600	46,600	46,600	46,600	46,600	46,600	64,803	75,000
	6층~ 9층	기본형	506,830	50,683	50,683	50,683	50,683	50,683	50,683	50,683	77,049	75,000
		마이너스옵션	471,073	47,107	47,107	47,107	47,107	47,107	47,107	47,107	66,324	75,000
	10층~ 최상층	기본형	511,900	51,190	51,190	51,190	51,190	51,190	51,190	51,190	78,570	75,000
		마이너스옵션	476,143	47,614	47,614	47,614	47,614	47,614	47,614	47,614	67,845	75,000
084.7100 A (84A)	1층	기본형	549,280	54,928	54,928	54,928	54,928	54,928	54,928	54,928	89,784	75,000
		마이너스옵션	508,861	50,886	50,886	50,886	50,886	50,886	50,886	50,886	77,659	75,000
	2층	기본형	561,090	56,109	56,109	56,109	56,109	56,109	56,109	56,109	93,327	75,000
		마이너스옵션	520,671	52,067	52,067	52,067	52,067	52,067	52,067	52,067	81,202	75,000
	3층	기본형	572,900	57,290	57,290	57,290	57,290	57,290	57,290	57,290	96,870	75,000
		마이너스옵션	532,481	53,248	53,248	53,248	53,248	53,248	53,248	53,248	84,745	75,000
	4층	기본형	578,810	57,881	57,881	57,881	57,881	57,881	57,881	57,881	98,643	75,000

주택형 (타입)	층별	구분	주택가격	계약금 10%	1차중도금 10%	2차중도금 10%	3차중도금 10%	4차중도금 10%	5차중도금 10%	6차중도금 10%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7.09.21)	('27.12.15)	('28.04.13)	('28.08.16)	('28.12.13)	('29.04.18)	입주시	
		마이너스옵션	538,391	53,839	53,839	53,839	53,839	53,839	53,839	53,839	86,518	75,000
	5층	기본형	584,720	58,472	58,472	58,472	58,472	58,472	58,472	58,472	100,416	75,000
		마이너스옵션	544,301	54,430	54,430	54,430	54,430	54,430	54,430	54,430	88,291	75,000
	6층~ 9층	기본형	590,620	59,062	59,062	59,062	59,062	59,062	59,062	59,062	102,186	75,000
		마이너스옵션	550,201	55,020	55,020	55,020	55,020	55,020	55,020	55,020	90,061	75,000
	10층~ 최상층	기본형	596,530	59,653	59,653	59,653	59,653	59,653	59,653	59,653	103,959	75,000
		마이너스옵션	556,111	55,611	55,611	55,611	55,611	55,611	55,611	55,611	91,834	75,000
084.9800 B (84B)	1층	기본형	540,010	54,001	54,001	54,001	54,001	54,001	54,001	54,001	87,003	75,000
		마이너스옵션	499,462	49,946	49,946	49,946	49,946	49,946	49,946	49,946	74,840	75,000
	2층	기본형	551,620	55,162	55,162	55,162	55,162	55,162	55,162	55,162	90,486	75,000
		마이너스옵션	511,072	51,107	51,107	51,107	51,107	51,107	51,107	51,107	78,323	75,000
	3층	기본형	563,240	56,324	56,324	56,324	56,324	56,324	56,324	56,324	93,972	75,000
		마이너스옵션	522,692	52,269	52,269	52,269	52,269	52,269	52,269	52,269	81,809	75,000
	4층	기본형	569,040	56,904	56,904	56,904	56,904	56,904	56,904	56,904	95,712	75,000
		마이너스옵션	528,492	52,849	52,849	52,849	52,849	52,849	52,849	52,849	83,549	75,000
	5층	기본형	574,850	57,485	57,485	57,485	57,485	57,485	57,485	57,485	97,455	75,000
		마이너스옵션	534,302	53,430	53,430	53,430	53,430	53,430	53,430	53,430	85,292	75,000
	6층~ 9층	기본형	580,660	58,066	58,066	58,066	58,066	58,066	58,066	58,066	99,198	75,000
		마이너스옵션	540,112	54,011	54,011	54,011	54,011	54,011	54,011	54,011	87,035	75,000
	10층~ 최상층	기본형	586,460	58,646	58,646	58,646	58,646	58,646	58,646	58,646	100,938	75,000
		마이너스옵션	545,912	54,591	54,591	54,591	54,591	54,591	54,591	54,591	88,775	75,000
084.8700 D (84D)	1층	기본형	550,320	55,032	55,032	55,032	55,032	55,032	55,032	55,032	90,096	75,000
		마이너스옵션	509,825	50,982	50,982	50,982	50,982	50,982	50,982	50,982	77,951	75,000
	2층	기본형	562,150	56,215	56,215	56,215	56,215	56,215	56,215	56,215	93,645	75,000
		마이너스옵션	521,655	52,165	52,165	52,165	52,165	52,165	52,165	52,165	81,500	75,000
	3층	기본형	573,990	57,399	57,399	57,399	57,399	57,399	57,399	57,399	97,197	75,000
		마이너스옵션	533,495	53,349	53,349	53,349	53,349	53,349	53,349	53,349	85,052	75,000
	4층	기본형	579,900	57,990	57,990	57,990	57,990	57,990	57,990	57,990	98,970	75,000
		마이너스옵션	539,405	53,940	53,940	53,940	53,940	53,940	53,940	53,940	86,825	75,000
	5층	기본형	585,820	58,582	58,582	58,582	58,582	58,582	58,582	58,582	100,746	75,000
		마이너스옵션	545,325	54,532	54,532	54,532	54,532	54,532	54,532	54,532	88,601	75,000
	6층~ 9층	기본형	591,740	59,174	59,174	59,174	59,174	59,174	59,174	59,174	102,522	75,000
		마이너스옵션	551,245	55,124	55,124	55,124	55,124	55,124	55,124	55,124	90,377	75,000
	10층~ 최상층	기본형	597,660	59,766	59,766	59,766	59,766	59,766	59,766	59,766	104,298	75,000
		마이너스옵션	557,165	55,716	55,716	55,716	55,716	55,716	55,716	55,716	92,153	75,000
084.5300 G (84G)	1층	기본형	559,070	55,907	55,907	55,907	55,907	55,907	55,907	55,907	92,721	75,000
		마이너스옵션	518,737	51,873	51,873	51,873	51,873	51,873	51,873	51,873	80,626	75,000
	2층	기본형	571,100	57,110	57,110	57,110	57,110	57,110	57,110	57,110	96,330	75,000
		마이너스옵션	530,767	53,076	53,076	53,076	53,076	53,076	53,076	53,076	84,235	75,000
	4층	기본형	589,130	58,913	58,913	58,913	58,913	58,913	58,913	58,913	101,739	75,000
		마이너스옵션	548,797	54,879	54,879	54,879	54,879	54,879	54,879	54,879	89,644	75,000
	5층	기본형	595,140	59,514	59,514	59,514	59,514	59,514	59,514	59,514	103,542	75,000
		마이너스옵션	554,807	55,480	55,480	55,480	55,480	55,480	55,480	55,480	91,447	75,000
	7층~ 8층	기본형	601,160	60,116	60,116	60,116	60,116	60,116	60,116	60,116	105,348	75,000
		마이너스옵션	560,827	56,082	56,082	56,082	56,082	56,082	56,082	56,082	93,253	75,000
084.4400 H (84H)	2층	기본형	570,490	57,049	57,049	57,049	57,049	57,049	57,049	57,049	96,147	75,000
		마이너스옵션	530,200	53,020	53,020	53,020	53,020	53,020	53,020	53,020	84,060	75,000
	3층	기본형	582,500	58,250	58,250	58,250	58,250	58,250	58,250	58,250	99,750	75,000
		마이너스옵션	542,210	54,221	54,221	54,221	54,221	54,221	54,221	54,221	87,663	75,000
	5층	기본형	594,510	59,451	59,451	59,451	59,451	59,451	59,451	59,451	103,353	75,000
		마이너스옵션	554,220	55,422	55,422	55,422	55,422	55,422	55,422	55,422	91,266	75,000
	6층, 8층	기본형	600,520	60,052	60,052	60,052	60,052	60,052	60,052	60,052	105,156	75,000
		마이너스옵션	560,230	56,023	56,023	56,023	56,023	56,023	56,023	56,023	93,069	75,000
084.5400I (84I)	3층	기본형	583,190	58,319	58,319	58,319	58,319	58,319	58,319	58,319	99,957	75,000
		마이너스옵션	542,852	54,285	54,285	54,285	54,285	54,285	54,285	54,285	87,857	75,000
	4층	기본형	589,200	58,920	58,920	58,920	58,920	58,920	58,920	58,920	101,760	75,000
		마이너스옵션	548,862	54,886	54,886	54,886	54,886	54,886	54,886	54,886	89,660	75,000
	6층,7층	기본형	601,230	60,123	60,123	60,123	60,123	60,123	60,123	60,123	105,369	75,000
		마이너스옵션	560,892	56,089	56,089	56,089	56,089	56,089	56,089	56,089	93,269	75,000
084.9800 J (84J)	1층	기본형	567,010	56,701	56,701	56,701	56,701	56,701	56,701	56,701	95,103	75,000
		마이너스옵션	526,462	52,646	52,646	52,646	52,646	52,646	52,646	52,646	82,940	75,000
	3층	기본형	591,400	59,140	59,140	59,140	59,140	59,140	59,140	59,140	102,420	75,000
		마이너스옵션	550,852	55,085	55,085	55,085	55,085	55,085	55,085	55,085	90,257	75,000
	5층	기본형	603,590	60,359	60,359	60,359	60,359	60,359	60,359	60,359	106,077	75,000
		마이너스옵션	563,042	56,304	56,304	56,304	56,304	56,304	56,304	56,304	93,914	75,000
	7층	기본형	609,690	60,969	60,969	60,969	60,969	60,969	60,969	60,969	107,907	75,000
		마이너스옵션	569,142	56,914	56,914	56,914	56,914	56,914	56,914	56,914	95,744	75,000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 주택구조 등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

금액이 적용됩니다.

※ **[중요]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분양가는 층별,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견본주택 등으로 공급가격, 동·호 배치도, 주택타입별 평면도 및 면적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융자금(주택도시기금 안내)>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4.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발코니출입문, 디지털도어록, 실외기실 출입문	목재 공틀(욕실),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실외기실 그릴창호
② 바닥	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걸레받이)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발코니 및 다용도실 벽도장(수성페인트) 설비배관 및 온도조절기, 전기(통신) 배관 및 배선, 배선기구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⑤ 욕실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공용욕실),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젠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통신)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누수감지센서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싱크절수기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가스배관 포함)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⑧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김치냉장고장, 시스템 선반	-
⑨ 기타	발코니 수전류, 자동 빨래 건조대, 드레스룸제습기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소방감지기, 침입감지기, 하향식 피난구,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기본형 설치), 세대 환기 시스템, 스피커, 복층형세대 계단 및 난간대

※ **마이너스옵션은 선택품목 결정기간 내 선택가능(품목별, 부분별 선택은 불가)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현관중문, 붙박이장, 인덕션, 시스템에어컨 등)'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최상층부터 최하층까지 연결된 우수,배수 입상관이 설치되고 위치를 이동하거나 배관을 임의해체할 수 없으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해당세대 및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우수배관은 타일 마감이 되지 않아 빗물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욕실의 급수, 급탕 매립박스 및 일부 설비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추후 입주자는 내부 공사시 점검구설치 등 유지관리에 문제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배기 팬 설치로 인해 외부 오염된 공기 또는 냄새가 욕실 내부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 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당해층 배기용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불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 발생하는 법령 등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확약서를 징구(제출하여야)합니다. (현장계약 장소에 양식 비치, 전자계약시 별도 안내)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5.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공통) **발코니 확장비용 안내**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주택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단위 : 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실별 구분 가격							
주택타입	내역	계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식당	드레스룸	알파룸
74A	기본공사비(A)	95,938	23,948	787	14,476	14,676	26,345	6,426	9,279
	확장공사비(B)	102,389	24,873	2,124	15,068	15,275	28,586	6,756	9,708
	계약자부담액(B-A)	6,451	925	1,337	**592**	**599**	**2,240**	**330**	429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5,483	786	1,136	503	509	1,904	280	365
84A	기본공사비(A)	98,898	25,000	787	15,620	15,812	19,688	10,028	11,963
	확장공사비(B)	107,609	26,008	2,124	16,280	16,480	23,639	10,569	12,510
	계약자부담액(B-A)	8,711	1,007	1,337	**660**	**667**	**3,951**	**541**	548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7,404	856	1,136	561	567	3,358	460	465
84B	기본공사비(A)	97,127	28,380	787	16,903	17,107	20,466	0	13,484
	확장공사비(B)	103,911	29,328	2,124	17,503	17,713	23,230	0	14,014
	계약자부담액(B-A)	6,784	948	1,337	**600**	**606**	**2,764**	**0**	530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5,767	806	1,136	510	515	2,350	0	450
84D	기본공사비(A)	96,328	25,741	787	17,332	17,332	17,920	17,215	0
	확장공사비(B)	103,134	26,671	2,124	17,985	17,985	20,421	17,948	0
	계약자부담액(B-A)	6,806	930	1,337	**653**	**653**	**2,501**	**733**	0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5,785	790	1,136	555	555	2,126	623	0
84G	기본공사비(A)	102,063	24,824	787	15,700	17,715	22,680	20,358	0
	확장공사비(B)	109,292	25,750	2,124	16,316	18,398	25,489	21,215	0
	계약자부담액(B-A)	7,229	926	1,337	**616**	**684**	**2,810**	**857**	0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6,144	787	1,136	524	581	2,388	728	0
84H	기본공사비(A)	102,183	24,802	787	15,896	17,698	22,661	20,339	0
	확장공사비(B)	109,471	25,740	2,124	16,527	18,392	25,481	21,207	0
	계약자부담액(B-A)	7,289	939	1,337	**632**	**693**	**2,821**	**868**	0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6,195	798	1,136	537	589	2,398	738	0
84I	기본공사비(A)	101,298	24,634	787	15,580	17,579	22,519	20,198	0
	확장공사비(B)	108,521	25,559	2,124	16,196	18,262	25,328	21,054	0
	계약자부담액(B-A)	7,224	924	1,337	**615**	**683**	**2,808**	**856**	0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6,140	786	1,136	523	580	2,387	728	0
84J	기본공사비(A)	118,828	23,637	24,950	787	17,447	40,067	11,940	0
	확장공사비(B)	126,482	24,527	26,036	2,124	17,895	43,558	12,342	0
	계약자부담액(B-A)	7,655	890	1,087	**1,337**	**448**	**3,490**	**403**	0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6,506	757	924	1,136	381	2,967	342	0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사전청약당첨자 대상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안내(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

[단위 : 천원]

주택타입	구분	발코니확장비용 (계)	계약금 5% (계약시)	중도금 30% ('28.04.13)	잔금 65% (입주시)
74A	기본형	6,451	322	1,935	4,194
	마이너스옵션	5,483	274	1,644	3,565
84A	기본형	8,711	435	2,613	5,663
	마이너스옵션	7,404	370	2,221	4,813
84B	기본형	6,784	339	2,035	4,410
	마이너스옵션	5,767	288	1,730	3,749
84D	기본형	6,806	340	2,042	4,424
	마이너스옵션	5,785	289	1,735	3,761
84G	기본형	7,229	361	2,168	4,700
	마이너스옵션	6,144	307	1,843	3,994
84H	기본형	7,289	364	2,186	4,739
	마이너스옵션	6,195	309	1,858	4,028
84I	기본형	7,224	361	2,167	4,696
	마이너스옵션	6,140	307	1,842	3,991
84J	기본형	7,655	382	2,296	4,977
	마이너스옵션	6,506	325	1,951	4,230

■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대상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안내(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

[단위 : 천원]

주택타입	구분	발코니확장비용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차 ('27.09.21)	중도금 2차 ('27.12.15)	중도금 3차 ('28.04.13)	중도금 4차 ('28.08.16)	중도금 5차 ('28.12.13)	중도금 6차 ('29.04.18)	잔금 (입주시)
74A	기본형	6,451	645	645	645	645	645	645	645	1,936
	마이너스옵션	5,483	548	548	548	548	548	548	548	1,647
84A	기본형	8,711	871	871	871	871	871	871	871	2,614
	마이너스옵션	7,404	740	740	740	740	740	740	740	2,224
84B	기본형	6,784	678	678	678	678	678	678	678	2,038
	마이너스옵션	5,767	577	577	577	577	577	577	577	1,728
84D	기본형	6,806	681	681	681	681	681	681	681	2,039
	마이너스옵션	5,785	579	579	579	579	579	579	579	1,732
84G	기본형	7,229	723	723	723	723	723	723	723	2,168
	마이너스옵션	6,144	614	614	614	614	614	614	614	1,846
84H	기본형	7,289	729	729	729	729	729	729	729	2,186
	마이너스옵션	6,195	620	620	620	620	620	620	620	1,855
84I	기본형	7,224	722	722	722	722	722	722	722	2,170
	마이너스옵션	6,140	614	614	614	614	614	614	614	1,842
84J	기본형	7,655	765	765	765	765	765	765	765	2,300
	마이너스옵션	6,506	651	651	651	651	651	651	651	1,949

■ 추가선택품목 안내 : 붙박이장, 냉장고장, 키큰장, 현관중문, 인덕션, 시스템에어컨, 드레스룸 강화, 파우더 가구, 거실특화, 주방특화, 욕실특화, 감성조명 등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주택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27.03.04.(목) 10:00 ~ '27.03.05.(금) 17:00]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은 선택 불가합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주택전시관 또는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품목 선택시 **동시 선택이 불가능한 옵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당첨자 대상 추가선택품목 비용 납부 안내(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

[단위 : 천원]

주택타입	유형	선택품목	기본형	선택 시 납부조건				유의사항
				합계	계약금 (5%)	중도금 (30%)	잔금	
					(계약시)	('28.04.13)	(입주시)	
74A	주방	1-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미설치(가구없음)	1,569	78	470	1,021	1-1 , 1-2 중 택 1
		1-2 냉장고장+키큰수납장(가전소물장+수납장)		2,162	108	648	1,406	
		2 아일랜드 식탁(MMA)	미설치	1,774	88	532	1,154	※ 2 선택시 4-1, 4-2 선택 불가
		4-1 [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MMA(주방가구상판)+도기질타일(주방벽체)+일반싱크수전+일반싱크볼 ※ 간접조명 미설치	3,203	160	960	2,083	4-1, 4-2 중 택 1 ※4-1, 4-2 선택시 2 선택불가
		4-2 [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5,213	260	1,563	3,390	
	주방 가전	8-1 인덕션 3구(화이트)	가스쿡탑(3구형)	590	29	177	384	8-1 , 8-2 중 택 1 ※ 화이트 : 다이얼/터치 조작형 ※블랙 : 터치 조작형
		8-2 인덕션 3구(블랙)		590	29	177	384	
	침실	9-1 [침실1]드레스룸(여닫이 도어+선반)+파우더가구	미설치	3,936	196	1,180	2,560	9-1, 9-3 동시선택 가능 [※9-1 선택시 최상단 선반 하부조명 포함]
		9-3 [침실3]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448	72	434	942	
	현관	10-1 [현관] 현관중문(3연동)	미설치	2,101	105	630	1,366	10-1, 10-2 동시선택 가능
		10-2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미설치	1,900	95	570	1,235	
	거실	11-1 [거실특화1]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	3,233	161	969	2,103	11-1, 11-2 중 택 1 [※11-2 선택시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 미설치]
		11-2 [거실특화2]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아트월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아트월 [포세린타일(600×1,200)]	2,940	147	882	1,911	
		12 13인치 월패드	10인치 월패드	483	24	144	315	-
	조명 특화 및 실링팬	13-1[실속형]다운라이트(주방,식탁)+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	일반 LED조명 ※거실(중앙직부등)은 디밍 제어 가능 ※ 실링팬 미설치	2,161	108	648	1,405	13-1, 13-2, 13-4 중 택 1 ※감성조명:디밍(5단계)+색온도(5단계)
		13-2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알파룸)		4,003	200	1,200	2,603	
		13-4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알파룸)+실링팬		4,453	222	1,335	2,896	
	바닥재	14-1 기능성륨카펫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14-1, 14-2 중 택 1
		14-2 강화합판마루(광폭)		792	39	237	516	
	욕실 자재	15 600각 포세린 벽타일(욕조 에이프런 포함)+수납장 하부 조명	도기질타일(600×300)	1,082	54	324	704	-
		16-1 욕실 다기능팬 (욕실1)	기본 욕실팬	600	30	180	390	욕실2 미설치
		17-1 [욕실특화]무광수전(세면기, 욕조, 샤워기) 및 무광악세서리등(휴지걸이, 수건걸이, 샤워부스프레임)+무광코너선반	기본수전(유광)+기본악세서리 등(유광)	750	37	225	488	17-1 선택시 수납기능이 없는 샤워/욕조 수전이 설치되어 코너선반이 추가됨
	시스템 에어컨	18-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스탠드형)+침실1(벽걸이형)]	4,581	229	1,374	2,978	18-1, 18-2, 18-3 중 택 1 ※옵션 선택 시 냉매매립 없음.
		1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 4대)		8,470	423	2,541	5,506	
		18-3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실내기 5대)		10,465	523	3,139	6,803	
84A	주방	1-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미설치(가구설치)	1,743	87	522	1,134	1-1, 1-2 중 택 1
		1-2 냉장고장+키큰수납장(가전소물장+수납장)		2,325	116	697	1,512	

		4-1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MMA(주방가구상판)+도기질타일(주방벽체)+일반싱크수전+일반싱크볼+주방가구 하부장 ※ 간접조명 미설치	3,634	181	1,090	2,363	4-1, 4-3 중 택 1
		4-3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하부간접조명+수납장변경(인출식밥통장, 팬서랍,상판콘센트)		3,844	192	1,153	2,499	
	주방 가전	8-1 인덕션 3구(화이트)	가스쿡탑(3구형)	590	29	177	384	8-1, 8-2 중 택 1 ※ 화이트 : 다이얼/터치 조작형 ※블랙 : 터치 조작형
		8-2 인덕션 3구(블랙)		590	29	177	384	
	침실	9-1 [침실1]드레스룸(여닫이 도어+선반)+파우더가구	미설치	4,300	215	1,290	2,795	9-1,9-2 9-3 동시선택 가능 [※9-1 선택시 최상단 선반 하부조명 포함]
		9-2 [침실2]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448	72	434	942	
		9-3 [침실3]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684	84	505	1,095	
	현관	10-1 [현관] 현관중문(3연동)	미설치	2,093	104	627	1,362	10-1, 10-2 동시선택 가능
		10-2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미설치	1,421	71	426	924	
	거실	11-1 [거실특화1]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	3,423	171	1,026	2,226	11-1, 11-2 중 택 1 [※11-2 선택시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 미설치]
		11-2 [거실특화2]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아트월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아트월 [포세린타일(600×1,200)]	3,104	155	931	2,018	
		12 13인치 월패드	10인치 월패드	483	24	144	315	-
	조명 특화 및 실링팬	13-1 [실속형]다운라이트(주방,식탁)+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	일반 LED조명 ※거실(중앙직부등)은 디밍 제어 가능 ※ 실링팬 미설치	2,186	109	655	1,422	13-1, 13-2, 13-4 중 택 1 ※감성조명:디밍(5단계)+색온도(5단계)
		13-2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알파룸)		4,042	202	1,212	2,628	
		13-4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알파룸)+실링팬		4,492	224	1,347	2,921	
	바닥재	14-1 기능성륨카펫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14-1, 14-2 중 택 1
		14-2 강화합판마루(광폭)		887	44	266	577	
	욕실 자재	15 600각 포세린 벽타일(욕조 에이프런 포함)+수납장 하부 조명	도기질타일(600×300)	1,171	58	351	762	-
		16-1 욕실 다기능팬(욕실1)	기본 욕실팬	600	30	180	390	욕실2 미설치
		17-1 [욕실특화]무광수전(세면기, 욕조, 샤워기) 및 무광악세서리등(휴지걸이, 수건걸이, 샤워부스프레임)+무광코너선반	기본수전(유광)+기본악세서리 등(유광)	750	37	225	488	17-1 선택시 수납기능이 없는 샤워/욕조 수전이 설치되어 코너선반이 추가됨
	시스템 에어컨	18-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스탠드형)+침실1(벽걸이형)	4,626	231	1,387	3,008	18-1, 18-2, 18-3 중 택 1 ※옵션 선택 시 냉매매립 없음.
		1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 4대)		8,652	432	2,595	5,625	
		18-3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실내기 5대)		10,574	528	3,172	6,874	
	주방	1-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미설치(가구없음)	1,783	89	534	1,160	1-1 , 1-2 중 택 1
		1-2 냉장고장+키큰수납장(가전소물장+수납장)		2,351	117	705	1,529	
		2 아일랜드식탁(MMA)	미설치	1,847	92	554	1,201	※2 선택시 4-1, 4-2 선택불가
		4-1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MMA(주방가구상판)+도기질타일(주방벽체)+일반싱크수전+일반싱크볼(간접조명 미설치)	3,685	184	1,105	2,396	4-1, 4-2 중 택 1 ※4-1, 4-2 선택시 2 선택불가
		4-2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6,201	310	1,860	4,031	
	주방 가전	8-1 인덕션 3구(화이트)	가스쿡탑(3구형)	590	29	177	384	8-1 , 8-2 중 택 1 ※ 화이트 : 다이얼/터치 조작형 ※블랙 : 터치 조작형
		8-2 인덕션 3구(블랙)		590	29	177	384	
	침실	9-1 [침실1]드레스룸(여닫이 도어+선반)+파우더가구	미설치	4,563	228	1,368	2,967	9-1, 9-2, 9-3 동시선택 가능 [※9-1 선택시 최상단선반 하부조명 포함]
		9-2 [침실2]붙박이장(여닫이)		1,684	84	505	1,095	
		9-3 [침실3]붙박이장(여닫이)		1,684	84	505	1,095	
	현관	10-1 [현관] 현관중문(3연동)	미설치	2,093	104	627	1,362	10-1, 10-2 동시선택 가능
		10-2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미설치	1,370	68	411	891	
84B	거실	11-1 [거실특화1]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	4,119	205	1,235	2,679	11-1, 11-2 중 택 1 [※11-2 선택시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 미설치]
		11-2 [거실특화2]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아트월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아트월 [포세린타일(600×1,200)]	3,709	185	1,112	2,412	
		12 13인치 월패드	10인치 월패드	483	24	144	315	
	조명 특화 및 실링팬	13-1[실속형]다운라이트(주방,식탁)+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	일반 LED조명 ※거실(중앙직부등)은 디밍 제어 가능 ※ 실링팬 미설치	2,186	109	655	1,422	13-1, 13-2, 13-4 중 택 1 ※감성조명:디밍(5단계)+색온도(5단계)
		13-2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알파룸)		4,042	202	1,212	2,628	
		13-4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알파룸)+실링팬		4,492	224	1,347	2,921	
	바닥재	14-1 기능성륨카펫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14-1, 14-2 중 택 1
		14-2 강화합판마루(광폭)		874	43	262	569	
	욕실 자재	15 600각 포세린 벽타일(욕조 에이프런 포함)+수납장 하부 조명	도기질타일(600×300)	1,159	57	347	755	-
		16-1 욕실 다기능팬(욕실1)	기본 욕실팬	600	30	180	390	욕실2 미설치
		17-1 [욕실특화]무광수전(세면기, 욕조, 샤워기) 및 무광악세서리등(휴지걸이, 수건걸이, 샤워부스프레임)+무광코너선반	기본수전(유광)+기본악세서리 등(유광)	750	37	225	488	17-1 선택시 수납기능이 없는 샤워/욕조 수전이 설치되어 코너선반이 추가됨
	시스템 에어컨	18-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스탠드형)+침실1(벽걸이형)	4,603	230	1,380	2,993	18-1, 18-2, 18-3 중 택 1 ※옵션 선택 시 냉매매립 없음.
		1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 4대)		9,067	453	2,720	5,894	
		18-3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실내기 5대)		10,426	521	3,127	6,778	
84D	주방	2 아일랜드식탁(MMA)	미설치	1,774	88	532	1,154	2 선택시 4-1, 4-2 선택불가
		4-1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MMA(주방가구상판)+도기질타일(주방벽체)+일반싱크수전+일반싱크볼 ※간접조명 미설치	3,688	184	1,106	2,398	4-1, 4-2 중 택 1 ※ 4-1, 4-2 선택시 2 선택 불가
		4-2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5,880	294	1,764	3,822	

84G	주방 및 팬트리	6-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키큰수납장(가전소물장+수납장)	미설치(가구없음) ※기본 팬트리(선반 미설치)	3,076	153	922	2,001	6-1, 6-2, 6-3 중 택 1 [※6-2, 6-3 선택시 7 선택불가, 6-1 선택시 11-3 선택불가]
		6-2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대형 팬트리(시스템선반)		3,446	172	1,033	2,241	
		6-3 냉장고장+키큰수납장(가전소물장+수납장)+대형팬트리(시스템선반)		4,222	211	1,266	2,745	
		7 [팬트리]시스템 선반	미설치	1,858	92	557	1,209	7선택시 6-2, 6-3 선택불가
	주방 가전	8-1 인덕션 3구(화이트)	가스쿡탑(3구형)	590	29	177	384	8-1, 8-2 중 택 1 ※ 화이트 : 다이얼/터치 조작형 ※블랙 : 터치 조작형
		8-2 인덕션 3구(블랙)		590	29	177	384	
	침실	9-1 [침실1]드레스룸(여닫이도어+선반)+파우더가구	미설치	5,517	275	1,655	3,587	9-1, 9-2, 9-3 동시선택 가능 [※9-1 선택시 최상단선반 하부조명 포함]
		9-2 [침실2]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684	84	505	1,095	
		9-3 [침실3]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684	84	505	1,095	
	현관	10-1 [현관] 현관중문(3연동)	미설치	2,075	103	622	1,350	10-1, 10-2 동시선택 가능
		10-2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미설치	1,404	70	421	913	
	거실	11-1 [거실특화1] 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	3,072	153	921	1,998	11-1, 11-2 중 택 1 [※11-2 선택시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 미설치]
		11-2 [거실특화2] 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아트월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아트월 [포세린타일(600×1,200)]	2,664	133	799	1,732	
		11-3 [거실특화추가] 주방/식당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	504	25	151	328	11-1 또는 11-2를 선택한 세대 중 6-2 또는 6-3을 선택한 세대만 선택 가능
		12 13인치 월패드	10인치 월패드	483	24	144	315	-
	조명 특화 및 실링팬	13-1 [실속형]다운라이트(주방,식탁)+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	일반 LED조명 ※거실(중앙직부등)은 디밍 제어 가능 ※ 실링팬 미설치	2,186	109	655	1,422	13-1, 13-3, 13-4 중 택 1 ※감성조명:디밍(5단계)+색온도(5단계)
		13-3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		3,938	196	1,181	2,561	
		13-4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실링팬		4,388	219	1,316	2,853	
	바닥재	14-1 기능성륨카펫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14-1, 14-2 중 택 1
		14-2 강화합판마루(광폭)		884	44	265	575	
	욕실 자재	15 600각 포세린 벽타일(욕조 에이프런 포함)+수납장 하부 조명	도기질타일(600×300)	1,127	56	338	733	-
		16-1 욕실 다기능팬 (욕실1)	기본 욕실팬	600	30	180	390	욕실2 미설치
		17-1 [욕실특화]무광수전(세면기, 욕조, 샤워기) 및 무광악세서리등(휴지걸이, 수건걸이, 샤워부스프레임)+무광코너선반	기본수전(유광)+ 기본악세서리 등(유광)	750	37	225	488	17-1 선택시 수납기능이 없는 샤워/욕조 수전이 설치되어 코너선반이 추가됨
	시스템 에어컨	18-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	4,664	233	1,399	3,032	18-1, 18-2 중 택 1 ※옵션 선택 시 냉매매립 없음.
		1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 4대)		8,490	424	2,547	5,519	
	주방	1-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미설치(가구없음)	1,783	89	534	1,160	1-1, 1-2 중 택 1
		1-2 냉장고장+키큰수납장(가전소물장+수납장)		2,351	117	705	1,529	
		2 아일랜드식탁(MMA)	미설치	2,062	103	618	1,341	※2 선택시 4-1, 4-2 선택불가
		4-1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MMA(주방가구상판)+ 도기질타일(주방벽체)+ 일반싱크수전+일반싱크볼 ※간접조명 미설치	3,905	195	1,171	2,539	4-1, 4-2 중 택1 ※4-1, 4-2 선택시 2 선택불가
		4-2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6,251	312	1,875	4,064	
	팬트리	7 [팬트리]시스템 선반	미설치	1,176	58	352	766	-
	주방 가전	8-1 인덕션 3구(화이트)	가스쿡탑(3구형)	590	29	177	384	8-1, 8-2 중 택 1 ※ 화이트 : 다이얼/터치 조작형 ※블랙 : 터치 조작형
		8-2 인덕션 3구(블랙)		590	29	177	384	
	침실	9-2 [침실2]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448	72	434	942	9-2, 9-3, 9-4 동시선택 가능 ※ 9-4 선택시 최상단 선반 하부조명 포함
		9-3 [침실3]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684	84	505	1,095	
		9-4 [침실1]드레스룸(슬라이딩 도어+선반)	파우더가구(건식세면대)	3,726	186	1,117	2,423	
	현관	10-1 [현관] 현관중문(3연동)	미설치	2,075	103	622	1,350	10-1, 10-2 동시선택 가능
		10-2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미설치	1,355	67	406	882	
	거실	11-1 [거실특화1]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	4,335	216	1,300	2,819	11-1, 11-2 중 택 1 [※11-2 선택시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 미설치]
		11-2 [거실특화2]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아트월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아트월 [포세린타일(600×1,200)]	3,914	195	1,174	2,545	
		12 13인치 월패드	10인치 월패드	483	24	144	315	
	조명 특화 및 실링팬	13-1 [실속형]다운라이트(주방,식탁)+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	일반 LED조명 ※거실(중앙직부등)은 디밍 제어 가능 ※ 실링팬 미설치	2,186	109	655	1,422	13-1, 13-3, 13-4 중 택 1 ※감성조명:디밍(5단계)+색온도(5단계)
		13-3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		4,042	202	1,212	2,628	
		13-4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실링팬		4,492	224	1,347	2,921	
	바닥재	14-1 기능성륨카펫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14-1, 14-2 중 택 1
		14-2 강화합판마루(광폭)		901	45	270	586	
	욕실 자재	15 600각 포세린 벽타일(욕조 에이프런 포함)+수납장 하부 조명	도기질타일(600×300)	1,155	57	346	752	-
		16-1 욕실 다기능팬(욕실1)	기본 욕실팬	600	30	180	390	욕실2 미설치
		17-1 [욕실특화]무광수전(세면기, 욕조, 샤워기) 및 무광악세서리 등(휴지걸이, 수건걸이, 샤워부스 프레임)+무광코너선반	기본수전(유광)+ 기본악세서리 등(유광)	752	37	225	490	17-1 선택시 수납기능이 없는 샤워/욕조 수전이 설치되어 코너선반이 추가됨
	시스템 에어컨	18-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	4,823	241	1,446	3,136	18-1, 18-2 중 택 1 ※옵션 선택 시 냉매 매립 없음
		1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 4대)		8,942	447	2,682	5,813	

84H	주방	1-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미설치(가구없음)	1,783	89	534	1,160	1-1, 1-2 중 택 1
		1-2 냉장고장+키큰수납장(가전소물장+수납장)		2,351	117	705	1,529	
		2 아일랜드식탁(MMA)	미설치	2,062	103	618	1,341	※2 선택시 4-1, 4-2 선택불가
		4-1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MMA(주방가구상판)+도기질타일(주방벽체)+일반싱크수전+일반싱크볼 ※간접조명 미설치	3,891	194	1,167	2,530	4-1, 4-2 중 택1 ※4-1, 4-2 선택시 2 선택불가
		4-2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6,237	311	1,871	4,055	
	팬트리	7 [팬트리]시스템 선반	미설치	1,176	58	352	766	-
	주방 가전	8-1 인덕션 3구(화이트)	가스쿡탑(3구형)	590	29	177	384	8-1, 8-2 중 택 1 ※ 화이트 : 다이얼/터치 조작형 ※블랙 : 터치 조작형
		8-2 인덕션 3구(블랙)		590	29	177	384	
	침실	9-2 [침실2]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448	72	434	942	9-2, 9-3, 9-4 동시선택 가능 ※ 9-4 선택시 최상단 선반 하부조명 포함
		9-3 [침실3]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684	84	505	1,095	
		9-4 [침실1]드레스룸(슬라이딩 도어+선반)	파우더가구(건식세면대)	3,726	186	1,117	2,423	
	현관	10-1 [현관] 현관중문(3연동)	미설치	2,075	103	622	1,350	10-1, 10-2 동시선택 가능
		10-2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미설치	1,355	67	406	882	
	거실	11-1 [거실특화1]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	4,335	216	1,300	2,819	11-1, 11-2 중 택 1 [※11-2 선택시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 미설치]
		11-2 [거실특화2]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아트월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아트월 [포세린타일(600×1,200)]	3,914	195	1,174	2,545	
		12 13인치 월패드	10인치 월패드	483	24	144	315	
	조명 특화 및 실링팬	13-1 [실속형]다운라이트(주방,식탁)+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	일반 LED조명 ※거실(중앙직부등)은 디밍 제어 가능 ※ 실링팬 미설치	2,186	109	655	1,422	13-1, 13-3, 13-4 중 택 1 ※감성조명:디밍(5단계)+색온도(5단계)
		13-3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		4,042	202	1,212	2,628	
		13-4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실링팬		4,492	224	1,347	2,921	
	바닥재	14-1 기능성룸카펫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14-1, 14-2 중 택 1
		14-2 강화합판마루(광폭)		901	45	270	586	
	욕실 자재	15 600각 포세린 벽타일(욕조 에이프런 포함)+수납장 하부 조명	도기질타일(600×300)	1,172	58	351	763	-
		16-1 욕실 다기능팬(욕실1)	기본 욕실팬	600	30	180	390	욕실2 미설치
		17-1 [욕실특화]무광수전(세면기, 욕조, 샤워기) 및 무광악세서리 등(휴지걸이, 수건걸이, 샤워부스 프레임)+무광코너선반	기본수전(유광)+기본악세서리 등(유광)	752	37	225	490	17-1 선택시 수납기능이 없는 샤워/욕조 수전이 설치되어 코너선반이 추가됨
	시스템 에어컨	18-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스탠드형)+침실1(벽걸이형)]	5,155	257	1,546	3,352	18-1, 18-2 중 택 1 ※옵션 선택 시 냉매 매립 없음
		1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 4대)		9,823	491	2,946	6,386	
84I	주방	1-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미설치(가구없음)	1,783	89	534	1,160	1-1, 1-2 중 택 1
		1-2 냉장고장+키큰수납장(가전소물장+수납장)		2,351	117	705	1,529	
		2 아일랜드식탁(MMA)	미설치	2,062	103	618	1,341	※2 선택시 4-1, 4-2 선택불가
		4-1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MMA(주방가구상판)+도기질타일(주방벽체)+일반싱크수전+일반싱크볼 ※간접조명 미설치	3,905	195	1,171	2,539	4-1, 4-2 중 택1 ※4-1, 4-2 선택시 2 선택불가
		4-2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6,251	312	1,875	4,064	
	팬트리	7 [팬트리]시스템 선반	미설치	1,176	58	352	766	-
	주방 가전	8-1 인덕션 3구(화이트)	가스쿡탑(3구형)	590	29	177	384	8-1, 8-2 중 택 1 ※ 화이트 : 다이얼/터치 조작형 ※블랙 : 터치 조작형
		8-2 인덕션 3구(블랙)		590	29	177	384	
	침실	9-2 [침실2]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448	72	434	942	9-2, 9-3, 9-4 동시선택 가능 ※ 9-4 선택시 최상단 선반 하부조명 포함
		9-3 [침실3]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684	84	505	1,095	
		9-4 [침실1]드레스룸(슬라이딩 도어+선반)	파우더가구(건식세면대)	3,726	186	1,117	2,423	
	현관	10-1 [현관] 현관중문(3연동)	미설치	2,093	104	627	1,362	10-1, 10-2 동시선택 가능
		10-2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미설치	1,355	67	406	882	
	거실	11-1 [거실특화1]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	4,335	216	1,300	2,819	11-1, 11-2 중 택 1 [※11-2 선택시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 미설치]
		11-2 [거실특화2]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아트월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아트월 [포세린타일(600×1,200)]	3,914	195	1,174	2,545	
		12 13인치 월패드	10인치 월패드	483	24	144	315	
	조명 특화 및 실링팬	13-1 [실속형]다운라이트(주방,식탁)+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	일반 LED조명 ※거실(중앙직부등)은 디밍 제어 가능 ※ 실링팬 미설치	2,186	109	655	1,422	13-1, 13-3, 13-4 중 택 1 ※감성조명:디밍(5단계)+색온도(5단계)
		13-3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		4,042	202	1,212	2,628	
		13-4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실링팬		4,492	224	1,347	2,921	
	바닥재	14-1 기능성룸카펫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14-1, 14-2 중 택 1
		14-2 강화합판마루(광폭)		900	45	270	585	
	욕실 자재	15 600각 포세린 벽타일(욕조 에이프런 포함)+수납장 하부 조명	도기질타일(600×300)	1,172	58	351	763	-
		16-1 욕실 다기능팬(욕실1)	기본 욕실팬	600	30	180	390	욕실2 미설치
		17-1 [욕실특화]무광수전(세면기, 욕조, 샤워기) 및 무광악세서리 등(휴지걸이, 수건걸이, 샤워부스 프레임)+무광코너선반	기본수전(유광)+기본악세서리 등(유광)	752	37	225	490	17-1 선택시 수납기능이 없는 샤워/욕조 수전이 설치되어 코너선반이 추가됨
	시스템 에어컨	18-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스탠드형)+침실1(벽걸이형)]	5,228	261	1,568	3,399	18-1, 18-2 중 택 1 ※옵션 선택 시 냉매 매립 없음
		1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 4대)		9,092	454	2,727	5,911	

84J	주방	1-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미설치(가구없음)	1,737	86	521	1,130	1-1, 1-2 중 택 1
		1-2 냉장고장+키큰수납장(가전소물장+수납장)		2,328	116	698	1,514	
		3 주방가구 연장 + 아일랜드식탁(MMA)	미설치	3,001	150	900	1,951	※3 선택 시 4-1, 4-4 선택불가
		4-1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MMA(주방가구상판)+도기질타일(주방벽체)+일반싱크수전+일반싱크볼 ※간접조명 미설치	3,993	199	1,197	2,597	4-1, 4-4 중 택1 ※4-1, 4-4 선택시 3 선택불가
		4-4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주방가구연장+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8,115	405	2,434	5,276	
		5 [보조주방] 하부장 설치(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미설치(가구없음)	2,432	121	729	1,582	
	팬트리	7 [팬트리]시스템 선반	미설치	893	44	267	582	-
	주방 가전	8-1 인덕션 3구(화이트)	가스쿡탑(3구형)	590	29	177	384	8-1, 8-2 중 택 1 ※ 화이트 : 다이얼/터치 조작형 ※블랙 : 터치 조작형
		8-2 인덕션 3구(블랙)		590	29	177	384	
	침실	9-1 [침실1]드레스룸(여닫이 도어+선반)+파우더가구	미설치	5,030	251	1,509	3,270	9-1, 9-2, 9-3 동시선택가능 ※9-1선택시최상단선반 하부조명 포함
		9-2 [침실2]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684	84	505	1,095	
		9-3 [침실3]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684	84	505	1,095	
	현관	10-1 [현관] 현관중문(3연동)	미설치	2,093	104	627	1,362	10-1, 10-2 동시선택 가능
		10-2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미설치	1,410	70	423	917	
	거실	11-1 [거실특화1]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	6,319	315	1,895	4,109	11-1, 11-2 중 택 1 [※11-2 선택시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 미설치]
		11-2 [거실특화2]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아트월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아트월 [포세린타일(600×1,200)]	6,060	303	1,818	3,939	
		12 13인치 월패드(1F)	10인치 월패드(1F,2F)	483	24	144	315	12 선택시 1F 13인치, 2F 10인치
	조명특화 및 실링팬	13-1 [실속형]다운라이트(주방,식탁)+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2)+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	일반 LED조명 ※거실(중앙직부등)은 디밍 제어 가능 ※ 실링팬 미설치	2,186	109	655	1,422	13-1, 13-3, 13-4 중 택 1 ※감성조명:디밍(5단계)+색온도(5단계)
		13-3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2)+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		3,938	196	1,181	2,561	
		13-4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2)+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실링팬		4,388	219	1,316	2,853	
	바닥재	14-1 기능성룸카펫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14-1, 14-2 중 택 1
		14-2 강화합판마루(광폭)		954	47	286	621	
	욕실자재	15 600각 포세린 벽타일(욕조 에이프런 포함)+수납장 하부 조명	도기질타일(600×300)	1,124	56	337	731	-
		16-2 욕실 다기능팬(욕실2)	기본 욕실팬	600	30	180	390	욕실1,3 미설치
		17-2 [욕실특화]무광수전(세면/샤워겸용, 세면기, 욕조) 및 무광악세서리 (휴지걸이, 수건걸이)+무광코너선반(욕실2)	기본수전(유광)+기본악세서리 (유광)	400	20	120	260	17-2 선택시 수납기능이 없는 욕조수전이 설치되어 코너선반이 추가됨(욕실1,3제외)
	시스템 에어컨	18-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스탠드형)+침실1(벽걸이형)]	6,441	322	1,932	4,187	18-1, 18-2 중 택 1 ※옵션 선택 시 냉매 매립 없음
		1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 4대)		9,835	491	2,950	6,394	

■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대상 추가선택품목 비용 납부 안내(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

[단위 : 천원]

주택타입	유형	선택품목	기본형	선택 시 납부조건									유의사항
				합계	계약금(10%)	중도금 1차(10%)	중도금 2차(10%)	중도금 3차(10%)	중도금 4차(10%)	중도금 5차(10%)	중도금 6차(10%)	잔금(입주시)	
					계약시	('27. 09.21)	('27. 12. 15)	('28. 04.13)	('28. 08.16)	('28. 12.13)	('29. 04.18)	입주시	
74A	주방	1-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미설치(가구없음)	1,569	156	156	156	156	156	156	156	477	1-1 , 1-2 중 택 1
		1-2 냉장고장+키큰수납장(가전소물장+수납장)		2,162	216	216	216	216	216	216	216	650	
		2 아일랜드 식탁(MMA)	미설치	1,774	177	177	177	177	177	177	177	535	※ 2 선택시 4-1, 4-2 선택 불가
		4-1 [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MMA(주방가구상판)+도기질타일(주방벽체)+일반싱크수전+일반싱크볼 ※ 간접조명 미설치	3,203	320	320	320	320	320	320	320	963	4-1, 4-2 중 택 1 ※4-1, 4-2 선택시 2 선택불가
		4-2 [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5,213	521	521	521	521	521	521	521	1,566	
	주방 가전	8-1 인덕션 3구(화이트)	가스쿡탑(3구형)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8-1 , 8-2 중 택 1 ※ 화이트 : 다이얼/터치 조작형 ※블랙 : 터치 조작형
		8-2 인덕션 3구(블랙)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침실	9-1 [침실1]드레스룸(여닫이 도어+선반)+파우더가구	미설치	3,936	393	393	393	393	393	393	393	1,185	9-1, 9-3 동시선택 가능 [※9-1 선택시 최상단 선반 하부조명 포함]
		9-3 [침실3]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448	144	144	144	144	144	144	144	440	
	현관	10-1 [현관] 현관중문(3연동)	미설치	2,101	210	210	210	210	210	210	210	631	10-1, 10-2 동시선택 가능
		10-2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미설치	1,90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570	
	거실	11-1 [거실특화1]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	3,233	323	323	323	323	323	323	323	972	11-1, 11-2 중 택 1 [※11-2 선택시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 미설치]
		11-2 [거실특화2]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아트월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아트월 [포세린타일(600×1,200)]	2,940	294	294	294	294	294	294	294	882	

		12 13인치 월패드	10인치 월패드	483	48	48	48	48	48	48	48	147	-
	조명 특화 및 실링 팬	13-1[실속형]다운라이트(주방,식탁)+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	일반 LED조명 ※거실(중앙직부등)은 디밍 제어 가능 ※ 실링팬 미설치	2,161	216	216	216	216	216	216	216	649	13-1, 13-2, 13-4 중 택 1 ※감성조명:디밍(5단계)+색온도(5단계)
		13-2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알파룸)		4,003	400	400	400	400	400	400	400	1,203	
		13-4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알파룸)+실링팬		4,453	445	445	445	445	445	445	445	1,338	
	바닥 재	14-1 기능성룸카펫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14-1, 14-2 중 택 1
		14-2 강화합판마루(광폭)		792	79	79	79	79	79	79	79	239	
	욕실 자재	15 600각 포세린 벽타일(욕조 에이프런 포함)+수납장 하부 조명	도기질타일(600×300)	1,082	108	108	108	108	108	108	108	326	-
		16-1 욕실 다기능팬 (욕실1)	기본 욕실팬	600	60	60	60	60	60	60	60	180	욕실2 미설치
		17-1 [욕실특화]무광수전(세면기, 욕조, 샤워기) 및 무광 악세서리등(휴지걸이, 수건걸이, 샤워부스프레임)+무광코너선반	기본수전(유광)+ 기본악세서리 등(유광)	750	75	75	75	75	75	75	75	225	17-1 선택시 수납기능이 없는 샤워/욕조 수전이 설치되어 코너선반이 추가됨
	시스템 에어컨	18-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	4,581	458	458	458	458	458	458	458	1,375	18-1, 18-2, 18-3 중 택 1 ※옵션 선택 시 냉매매립 없음.
		1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 4대)		8,470	847	847	847	847	847	847	847	2,541	
		18-3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실내기 5대)		10,465	1,046	1,046	1,046	1,046	1,046	1,046	1,046	3,143	
84A	주방	1-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미설치(가구설치)	1,743	174	174	174	174	174	174	174	525	1-1, 1-2 중 택 1
		1-2 냉장고장+키큰수납장(가전소물장+수납장)		2,325	232	232	232	232	232	232	232	701	
		4-1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MMA(주방가구상판) + 도기질타일(주방벽체)+ 일반싱크수전+일반 싱크볼+주방가구 하부장 ※ 간접조명 미설치	3,634	363	363	363	363	363	363	363	1,093	4-1, 4-3 중 택 1
		4-3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하부간접조명+수납장변경(인출식밥통장, 팬서랍, 상판콘센트)		3,844	384	384	384	384	384	384	384	1,156	
	주방 가전	8-1 인덕션 3구(화이트)	가스쿡탑(3구형)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8-1, 8-2 중 택 1 ※ 화이트 : 다이얼/터치 조작형 ※블랙 : 터치 조작형
		8-2 인덕션 3구(블랙)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침실	9-1 [침실1]드레스룸(여닫이 도어+선반)+파우더가구	미설치	4,300	430	430	430	430	430	430	430	1,290	9-1,9-2 9-3 동시선택 가능 [※9-1 선택시 최상단 선반 하부조명 포함]
		9-2 [침실2]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448	144	144	144	144	144	144	144	440	
		9-3 [침실3]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684	168	168	168	168	168	168	168	508	
	현관	10-1 [현관] 현관중문(3연동)	미설치	2,093	209	209	209	209	209	209	209	630	10-1, 10-2 동시선택 가능
		10-2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미설치	1,421	142	142	142	142	142	142	142	427	
	거실	11-1 [거실특화1]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	3,423	342	342	342	342	342	342	342	1,029	11-1, 11-2 중 택 1 [※11-2 선택시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 미설치]
		11-2 [거실특화2]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아트월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아트월 [포세린타일(600×1,200)]	3,104	310	310	310	310	310	310	310	934	
		12 13인치 월패드	10인치 월패드	483	48	48	48	48	48	48	48	147	-
	조명 특화 및 실링 팬	13-1[실속형]다운라이트(주방,식탁)+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	일반 LED조명 ※거실(중앙직부등)은 디밍 제어 가능 ※ 실링팬 미설치	2,186	218	218	218	218	218	218	218	660	13-1, 13-2, 13-4 중 택 1 ※감성조명:디밍(5단계)+색온도(5단계)
		13-2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알파룸)		4,042	404	404	404	404	404	404	404	1,214	
		13-4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알파룸)+실링팬		4,492	449	449	449	449	449	449	449	1,349	
	바닥 재	14-1 기능성룸카펫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14-1, 14-2 중 택 1
		14-2 강화합판마루(광폭)		887	88	88	88	88	88	88	88	271	
	욕실 자재	15 600각 포세린 벽타일(욕조 에이프런 포함)+수납장 하부 조명	도기질타일(600×300)	1,171	117	117	117	117	117	117	117	352	-
		16-1 욕실 다기능팬(욕실1)	기본 욕실팬	600	60	60	60	60	60	60	60	180	욕실2 미설치
		17-1 [욕실특화]무광수전(세면기, 욕조, 샤워기) 및 무광 악세서리등(휴지걸이, 수건걸이, 샤워부스프레임)+무광코너선반	기본수전(유광)+ 기본악세서리 등(유광)	750	75	75	75	75	75	75	75	225	17-1 선택시 수납기능이 없는 샤워/욕조 수전이 설치되어 코너선반이 추가됨
	시스템 에어컨	18-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	4,626	462	462	462	462	462	462	462	1,392	18-1, 18-2, 18-3 중 택 1 ※옵션 선택 시 냉매매립 없음.
		1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 4대)		8,652	865	865	865	865	865	865	865	2,597	
		18-3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실내기 5대)		10,574	1,057	1,057	1,057	1,057	1,057	1,057	1,057	3,175	
84B	주방	1-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미설치(가구없음)	1,783	178	178	178	178	178	178	178	537	1-1 , 1-2 중 택 1
		1-2 냉장고장+키큰수납장(가전소물장+수납장)		2,351	235	235	235	235	235	235	235	706	
		2 아일랜드식탁(MMA)	미설치	1,847	184	184	184	184	184	184	184	559	※2 선택시 4-1, 4-2 선택불가

		4-1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MMA(주방가구상판)+도기질타일(주방벽체)+일반싱크수전+일반싱크볼(간접조명 미설치)	3,685	368	368	368	368	368	368	368	1,109	4-1, 4-2 중 택 1 ※4-1, 4-2 선택시 2 선택불가
		4-2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6,201	620	620	620	620	620	620	620	1,861	
	주방 가전	8-1 인덕션 3구(화이트)	가스쿡탑(3구형)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8-1 , 8-2 중 택 1 ※ 화이트 : 다이얼/터치 조작형 ※블랙 : 터치 조작형
		8-2 인덕션 3구(블랙)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침실	9-1 [침실1]드레스룸(여닫이 도어+선반)+파우더가구	미설치	4,563	456	456	456	456	456	456	456	1,371	9-1, 9-2, 9-3 동시선택 가능 [※9-1 선택시 최상단선반 하부조명 포함]
		9-2 [침실2]붙박이장(여닫이)		1,684	168	168	168	168	168	168	168	508	
		9-3 [침실3]붙박이장(여닫이)		1,684	168	168	168	168	168	168	168	508	
	현관	10-1 [현관] 현관중문(3연동)	미설치	2,093	209	209	209	209	209	209	209	630	10-1, 10-2 동시선택 가능
		10-2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미설치	1,370	137	137	137	137	137	137	137	411	
	거실	11-1 [거실특화1]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	4,119	411	411	411	411	411	411	411	1,242	11-1, 11-2 중 택 1 [※11-2 선택시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 미설치]
		11-2 [거실특화2]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아트월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아트월 [포세린타일(600×1,200)]	3,709	370	370	370	370	370	370	370	1,119	
		12 13인치 월패드	10인치 월패드	483	48	48	48	48	48	48	48	147	
	조명 특화 및 실링 팬	13-1[실속형]다운라이트(주방,식탁)+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	일반 LED조명 ※거실(중앙직부등)은 디밍 제어 가능 ※ 실링팬 미설치	2,186	218	218	218	218	218	218	218	660	13-1, 13-2, 13-4 중 택 1 ※감성조명:디밍(5단계)+색온도(5단계)
		13-2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알파룸)		4,042	404	404	404	404	404	404	404	1,214	
		13-4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알파룸)+실링팬		4,492	449	449	449	449	449	449	449	1,349	
	바닥재	14-1 기능성륨카펫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14-1, 14-2 중 택 1
		14-2 강화합판마루(광폭)		874	87	87	87	87	87	87	87	265	
	욕실 자재	15 600각 포세린 벽타일(욕조 에이프런 포함)+수납장 하부 조명	도기질타일(600×300)	1,159	115	115	115	115	115	115	115	354	-
		16-1 욕실 다기능팬(욕실1)	기본 욕실팬	600	60	60	60	60	60	60	60	180	욕실2 미설치
		17-1 [욕실특화]무광수전(세면기, 욕조, 샤워기) 및 무광악세서리등(휴지걸이, 수건걸이, 샤워부스프레임)+무광코너선반	기본수전(유광)+기본악세서리등(유광)	750	75	75	75	75	75	75	75	225	17-1 선택시 수납기능이 없는 샤워/욕조 수전이 설치되어 코너선반이 추가됨
	시스템 에어컨	18-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배관만 설치[(거실(스탠드형)+침실1(벽걸이형)	4,603	460	460	460	460	460	460	460	1,383	18-1, 18-2, 18-3 중 택 1 ※옵션 선택 시 냉매매립 없음.
		1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 4대)		9,067	906	906	906	906	906	906	906	2,725	
		18-3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실내기 5대)		10,426	1,042	1,042	1,042	1,042	1,042	1,042	1,042	3,132	
84D	주방	2 아일랜드식탁(MMA)	미설치	1,774	177	177	177	177	177	177	177	535	2 선택시 4-1, 4-2 선택불가
		4-1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MMA(주방가구상판)+도기질타일(주방벽체)+일반싱크수전+일반싱크볼 ※간접조명 미설치	3,688	368	368	368	368	368	368	368	1,112	4-1, 4-2 중 택 1 ※ 4-1, 4-2 선택시 2 선택 불가
		4-2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5,880	588	588	588	588	588	588	588	1,764	
	주방 및 팬트리	6-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키큰수납장(가전소물장+수납장)	미설치(가구없음) ※기본 팬트리(선반 미설치)	3,076	307	307	307	307	307	307	307	927	6-1, 6-2, 6-3 중 택 1 [※6-2, 6-3 선택시 7 선택불가, 6-1 선택시 11-3 선택불가]
		6-2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대형 팬트리(시스템선반)		3,446	344	344	344	344	344	344	344	1,038	
		6-3 냉장고장+키큰수납장(가전소물장+수납장)+대형팬트리(시스템선반)		4,222	422	422	422	422	422	422	422	1,268	
		7 [팬트리]시스템 선반	미설치	1,858	185	185	185	185	185	185	185	563	7선택시 6-2, 6-3 선택불가
	주방 가전	8-1 인덕션 3구(화이트)	가스쿡탑(3구형)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8-1, 8-2 중 택 1 ※ 화이트 : 다이얼/터치 조작형 ※블랙 : 터치 조작형
		8-2 인덕션 3구(블랙)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침실	9-1 [침실1]드레스룸(여닫이도어+선반)+파우더가구	미설치	5,517	551	551	551	551	551	551	551	1,660	9-1, 9-2, 9-3 동시선택 가능 [※9-1 선택시 최상단선반 하부조명 포함]
		9-2 [침실2]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684	168	168	168	168	168	168	168	508	
		9-3 [침실3]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684	168	168	168	168	168	168	168	508	
	현관	10-1 [현관] 현관중문(3연동)	미설치	2,075	207	207	207	207	207	207	207	626	10-1, 10-2 동시선택 가능
		10-2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미설치	1,404	140	140	140	140	140	140	140	424	
	거실	11-1 [거실특화1] 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	3,072	307	307	307	307	307	307	307	923	11-1, 11-2 중 택 1 [※11-2 선택시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 미설치]
		11-2 [거실특화2] 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아트월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아트월 [포세린타일(600×1,200)]	2,664	266	266	266	266	266	266	266	802	
		11-3 [거실특화추가] 주방/식당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	504	50	50	50	50	50	50	50	154	11-1 또는 11-2 를 선택한 세대 중 6-2 또는 6-3 을 선택한 세대만 선택 가능
		12 13인치 월패드	10인치 월패드	483	48	48	48	48	48	48	48	147	-

	조명 특화 및 실링 팬	13-1 [실속형]다운라이트(주방,식탁)+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 (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	일반 LED조명 ※거실(중앙직부등)은 디밍 제어 가능 ※ 실링팬 미설치	2,186	218	218	218	218	218	218	218	660	13-1, 13-3, 13-4 중 택 1 ※감성조명:디밍(5단계)+색온도(5단계)
		13-3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 +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		3,938	393	393	393	393	393	393	393	1,187	
		13-4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실링팬		4,388	438	438	438	438	438	438	438	1,322	
	바닥재	14-1 기능성륨카펫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14-1, 14-2 중 택 1
		14-2 강화합판마루(광폭)		884	88	88	88	88	88	88	88	268	
	욕실 자재	15 600각 포세린 벽타일(욕조 에이프런 포함)+수납장 하부 조명	도기질타일(600×300)	1,127	112	112	112	112	112	112	112	343	-
		16-1 욕실 다기능팬 (욕실1)	기본 욕실팬	600	60	60	60	60	60	60	60	180	욕실2 미설치
		17-1 [욕실특화]무광수전(세면기, 욕조, 샤워기) 및 무광악세서리등(휴지걸이, 수건걸이, 샤워부스프레임)+무광코너선반	기본수전(유광)+ 기본악세서리 등(유광)	750	75	75	75	75	75	75	75	225	17-1 선택시 수납기능이 없는 샤워/욕조 수전이 설치되어 코너선반이 추가됨
	시스템 에어컨	18-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	4,664	466	466	466	466	466	466	466	1,402	18-1, 18-2 중 택 1 ※옵션 선택 시 냉매매립 없음.
		1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 4대)		8,490	849	849	849	849	849	849	849	2,547	
84G	주방	1-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미설치(가구없음)	1,783	178	178	178	178	178	178	178	537	1-1, 1-2 중 택 1
		1-2 냉장고장+키큰수납장(가전소물장+수납장)		2,351	235	235	235	235	235	235	235	706	
		2 아일랜드식탁(MMA)	미설치	2,062	206	206	206	206	206	206	206	620	※2 선택시 4-1, 4-2 선택불가
		4-1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 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MMA(주방가구상판) + 도기질타일(주방벽체)+ 일반싱크수전+일반 싱크볼 ※간접조명 미설치	3,905	390	390	390	390	390	390	390	1,175	4-1, 4-2 중 택1 ※4-1, 4-2 선택시 2 선택불가
		4-2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 상부장 하부 간접조명+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6,251	625	625	625	625	625	625	625	1,876	
	팬트리	7 [팬트리]시스템 선반	미설치	1,176	117	117	117	117	117	117	117	357	-
	주방 가전	8-1 인덕션 3구(화이트)	가스쿡탑(3구형)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8-1, 8-2 중 택 1 ※ 화이트 : 다이얼/터치 조작형 ※블랙 : 터치 조작형
		8-2 인덕션 3구(블랙)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침실	9-2 [침실2]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448	144	144	144	144	144	144	144	440	9-2, 9-3, 9-4 동시선택 가능 ※ 9-4 선택시 최상단 선반 하부조명 포함
		9-3 [침실3]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684	168	168	168	168	168	168	168	508	
		9-4 [침실1]드레스룸(슬라이딩 도어+선반)	파우더가구(건식세면대)	3,726	372	372	372	372	372	372	372	1,122	
	현관	10-1 [현관] 현관중문(3연동)	미설치	2,075	207	207	207	207	207	207	207	626	10-1, 10-2 동시선택 가능
		10-2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미설치	1,355	135	135	135	135	135	135	135	410	
	거실	11-1 [거실특화1]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	4,335	433	433	433	433	433	433	433	1,304	11-1, 11-2 중 택 1 [※11-2 선택시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 미설치]
		11-2 [거실특화2]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아트월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아트월 [포세린타일(600×1,200)]	3,914	391	391	391	391	391	391	391	1,177	
		12 13인치 월패드	10인치 월패드	483	48	48	48	48	48	48	48	147	
	조명 특화 및 실링 팬	13-1 [실속형]다운라이트(주방,식탁)+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	일반 LED조명 ※거실(중앙직부등)은 디밍 제어 가능 ※ 실링팬 미설치	2,186	218	218	218	218	218	218	218	660	13-1, 13-3, 13-4 중 택 1 ※감성조명:디밍(5단계)+색온도(5단계)
		13-3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		4,042	404	404	404	404	404	404	404	1,214	
		13-4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실링팬		4,492	449	449	449	449	449	449	449	1,349	
	바닥재	14-1 기능성륨카펫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14-1, 14-2 중 택 1
		14-2 강화합판마루(광폭)		901	90	90	90	90	90	90	90	271	
	욕실 자재	15 600각 포세린 벽타일(욕조 에이프런 포함)+수납장 하부 조명	도기질타일(600×300)	1,15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350	-
		16-1 욕실 다기능팬(욕실1)	기본 욕실팬	600	60	60	60	60	60	60	60	180	욕실2 미설치
		17-1 [욕실특화]무광수전(세면기, 욕조, 샤워기) 및 무광악세서리 등(휴지걸이, 수건걸이, 샤워부스 프레임)+무광코너선반	기본수전(유광)+ 기본악세서리 등(유광)	752	75	75	75	75	75	75	75	227	17-1 선택시 수납기능이 없는 샤워/욕조 수전이 설치되어 코너선반이 추가됨
	시스템 에어컨	18-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	4,823	482	482	482	482	482	482	482	1,449	18-1, 18-2 중 택 1 ※옵션 선택 시 냉매 매립 없음
		1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 4대)		8,942	894	894	894	894	894	894	894	2,684	
84H	주방	1-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미설치(가구없음)	1,783	178	178	178	178	178	178	178	537	1-1, 1-2 중 택 1
		1-2 냉장고장+키큰수납장(가전소물장+수납장)		2,351	235	235	235	235	235	235	235	706	
		2 아일랜드식탁(MMA)	미설치	2,062	206	206	206	206	206	206	206	620	※2 선택시 4-1, 4-2 선택불가
		4-1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	MMA(주방가구상판)	3,891	389	389	389	389	389	389	389	1,168	4-1, 4-2 중 택1

		사각싱크볼+ 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 도기질타일(주방벽체)+ 일반싱크수전+일반싱크볼 ※간접조명 미설치										
		4-2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 상부장 하부 간접조명+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6,237	623	623	623	623	623	623	623	1,876	※4-1, 4-2 선택시 2 선택불가
	팬트리	7 [팬트리]시스템 선반	미설치	1,176	117	117	117	117	117	117	117	357	-
	주방가전	8-1 인덕션 3구(화이트)	가스쿡탑(3구형)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8-1, 8-2 중 택 1 ※ 화이트 : 다이얼/터치 조작형 ※블랙 : 터치 조작형
		8-2 인덕션 3구(블랙)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침실	9-2 [침실2]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448	144	144	144	144	144	144	144	440	9-2, 9-3, 9-4 동시선택 가능 ※ 9-4 선택시 최상단 선반 하부조명 포함
		9-3 [침실3]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684	168	168	168	168	168	168	168	508	
		9-4 [침실1]드레스룸(슬라이딩 도어+선반)	파우더가구(건식세면대)	3,726	372	372	372	372	372	372	372	1,122	
	현관	10-1 [현관] 현관중문(3연동)	미설치	2,075	207	207	207	207	207	207	207	626	10-1, 10-2 동시선택 가능
		10-2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미설치	1,355	135	135	135	135	135	135	135	410	
	거실	11-1 [거실특화1]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	4,335	433	433	433	433	433	433	433	1,304	11-1, 11-2 중 택 1 [※11-2 선택시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 미설치]
		11-2 [거실특화2]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아트월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아트월 [포세린타일(600×1,200)]	3,914	391	391	391	391	391	391	391	1,177	
		12 13인치 월패드	10인치 월패드	483	48	48	48	48	48	48	48	147	
	조명특화 및 실링팬	13-1 [실속형]다운라이트(주방,식탁)+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	일반 LED조명 ※거실(중앙직부등)은 디밍 제어 가능 ※ 실링팬 미설치	2,186	218	218	218	218	218	218	218	660	13-1, 13-3, 13-4 중 택 1 ※감성조명:디밍(5단계)+색온도(5단계)
		13-3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		4,042	404	404	404	404	404	404	404	1,214	
		13-4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실링팬		4,492	449	449	449	449	449	449	449	1,349	
	바닥재	14-1 기능성룸카펫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14-1, 14-2 중 택 1
		14-2 강화합판마루(광폭)		901	90	90	90	90	90	90	90	271	
	욕실자재	15 600각 포세린 벽타일(욕조 에이프런 포함)+수납장 하부 조명	도기질타일(600×300)	1,172	117	117	117	117	117	117	117	353	-
		16-1 욕실 다기능팬(욕실1)	기본 욕실팬	600	60	60	60	60	60	60	60	180	욕실2 미설치
		17-1 [욕실특화]무광수전(세면기, 욕조, 샤워기) 및 무광악세서리 등(휴지걸이, 수건걸이, 샤워부스 프레임)+무광 코너선반	기본수전(유광)+ 기본악세서리 등(유광)	752	75	75	75	75	75	75	75	227	17-1 선택시 수납기능이 없는 샤워/욕조 수전이 설치되어 코너선반이 추가됨
	시스템에어컨	18-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스탠드형)+침실1(벽걸이형)]	5,155	515	515	515	515	515	515	515	1,550	18-1, 18-2 중 택 1 ※옵션 선택 시 냉매 매립 없음
		1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 4대)		9,823	982	982	982	982	982	982	982	2,949	
84I	주방	1-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미설치(가구없음)	1,783	178	178	178	178	178	178	178	537	1-1, 1-2 중 택 1
		1-2 냉장고장+키큰수납장(가전소물장+수납장)		2,351	235	235	235	235	235	235	235	706	
		2 아일랜드식탁(MMA)	미설치	2,062	206	206	206	206	206	206	206	620	※2 선택시 4-1, 4-2 선택불가
		4-1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 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MMA(주방가구상판)+ 도기질타일(주방벽체)+ 일반싱크수전+일반싱크볼 ※간접조명 미설치	3,905	390	390	390	390	390	390	390	1,175	4-1, 4-2 중 택1 ※4-1, 4-2 선택시 2 선택불가
		4-2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 상부장 하부 간접조명+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6,251	625	625	625	625	625	625	625	1,876	
	팬트리	7 [팬트리]시스템 선반	미설치	1,176	117	117	117	117	117	117	117	357	-
	주방가전	8-1 인덕션 3구(화이트)	가스쿡탑(3구형)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8-1, 8-2 중 택 1 ※ 화이트 : 다이얼/터치 조작형 ※블랙 : 터치 조작형
		8-2 인덕션 3구(블랙)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침실	9-2 [침실2]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448	144	144	144	144	144	144	144	440	9-2, 9-3, 9-4 동시선택 가능 ※ 9-4 선택시 최상단 선반 하부조명 포함
		9-3 [침실3]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684	168	168	168	168	168	168	168	508	
		9-4 [침실1]드레스룸(슬라이딩 도어+선반)	파우더가구(건식세면대)	3,726	372	372	372	372	372	372	372	1,122	
	현관	10-1 [현관] 현관중문(3연동)	미설치	2,093	209	209	209	209	209	209	209	630	10-1, 10-2 동시선택 가능
		10-2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미설치	1,355	135	135	135	135	135	135	135	410	
	거실	11-1 [거실특화1]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	4,335	433	433	433	433	433	433	433	1,304	11-1, 11-2 중 택 1 [※11-2 선택시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 미설치]
		11-2 [거실특화2]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아트월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아트월 [포세린타일(600×1,200)]	3,914	391	391	391	391	391	391	391	1,177	
		12 13인치 월패드	10인치 월패드	483	48	48	48	48	48	48	48	147	
	조명특화 및 실링팬	13-1 [실속형]다운라이트(주방,식탁)+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	일반 LED조명 ※거실(중앙직부등)은 디밍 제어 가능 ※ 실링팬 미설치	2,186	218	218	218	218	218	218	218	660	13-1, 13-3, 13-4 중 택 1 ※감성조명:디밍(5단계)+색온도(5단계)
		13-3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		4,042	404	404	404	404	404	404	404	1,214	
		13-4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1)+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실링팬		4,492	449	449	449	449	449	449	449	1,349	

	바닥재	14-1 기능성륨카펫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14-1, 14-2 중 택 1
		14-2 강화합판마루(광폭)		900	90	90	90	90	90	90	90	270		
	욕실자재	15 600각 포세린 벽타일(욕조 에이프런 포함)+수납장 하부 조명	도기질타일(600×300)	1,172	117	117	117	117	117	117	117	353		-
		16-1 욕실 다기능팬(욕실1)	기본 욕실팬	600	60	60	60	60	60	60	60	180		욕실2 미설치
		17-1 [욕실특화]무광수전(세면기, 욕조, 샤워기) 및 무광악세서리 등(휴지걸이, 수건걸이, 샤워부스 프레임)+무광코너선반	기본수전(유광)+기본악세서리 등(유광)	752	75	75	75	75	75	75	75	227		17-1 선택시 수납기능이 없는 샤워/욕조 수전이 설치되어 코너선반이 추가됨
	시스템에어컨	18-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배관만 설치[(거실(스탠드형)+침실1(벽걸이형)]	5,228	522	522	522	522	522	522	522	1,574		18-1, 18-2 중 택 1 ※옵션 선택 시 냉매 매립 없음
		1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 4대)		9,092	909	909	909	909	909	909	909	2,729		
84J	주방	1-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미설치(가구없음)	1,737	173	173	173	173	173	173	173	526		1-1, 1-2 중 택 1
		1-2 냉장고장+키큰수납장(가전소물장+수납장)		2,328	232	232	232	232	232	232	232	704		
		3 주방가구 연장 + 아일랜드식탁(MMA)	미설치	3,001	300	300	300	300	300	300	300	901		※3 선택 시 4-1, 4-4 선택불가
		4-1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MMA(주방가구상판)+도기질타일(주방벽체)+일반싱크수전+일반싱크볼 ※간접조명 미설치	3,993	399	399	399	399	399	399	399	1,200		4-1, 4-4 중 택1 ※4-1, 4-4 선택시 3 선택불가
		4-4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주방가구연장+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디자인싱크수전+사각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8,115	811	811	811	811	811	811	811	2,438		
		5 [보조주방] 하부장 설치(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미설치(가구없음)	2,432	243	243	243	243	243	243	243	731		
	팬트리	7 [팬트리]시스템 선반	미설치	893	89	89	89	89	89	89	89	270		-
	주방가전	8-1 인덕션 3구(화이트)	가스쿡탑(3구형)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8-1, 8-2 중 택 1 ※ 화이트 : 다이얼/터치 조작형 ※블랙 : 터치 조작형
		8-2 인덕션 3구(블랙)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침실	9-1 [침실1]드레스룸(여닫이 도어+선반)+파우더가구	미설치	5,030	503	503	503	503	503	503	503	1,509		9-1,9-2,9-3 동시선택가능 ※9-1선택시최상단선반 하부조명 포함
		9-2[침실2]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684	168	168	168	168	168	168	168	508		
		9-3 [침실3]붙박이장(여닫이)	미설치	1,684	168	168	168	168	168	168	168	508		
	현관	10-1 [현관] 현관중문(3연동)	미설치	2,093	209	209	209	209	209	209	209	630		10-1, 10-2 동시선택 가능
		10-2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미설치	1,410	141	141	141	141	141	141	141	423		
	거실	11-1 [거실특화1]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	6,319	631	631	631	631	631	631	631	1,902		11-1, 11-2 중 택 1 [※11-2 선택시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 미설치]
		11-2 [거실특화2]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아트월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아트월[포세린타일(600×1,200)]	6,060	606	606	606	606	606	606	606	1,818		
		12 13인치 월패드(1F)	10인치 월패드(1F,2F)	483	48	48	48	48	48	48	48	147		12 선택시 1F 13인치, 2F 10인치
	조명특화 및 실링팬	13-1 [실속형]다운라이트(주방,식탁)+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2)+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	일반 LED조명 ※거실(중앙직부등)은 디밍 제어 가능 ※ 실링팬 미설치	2,186	218	218	218	218	218	218	218	660		13-1, 13-3, 13-4 중 택 1 ※감성조명:디밍(5단계)+색온도(5단계)
		13-3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2)+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		3,938	393	393	393	393	393	393	393	1,187		
		13-4 [고급형]다운라이트(거실,주방,식탁,아트월)+욕실슬림등+욕조상부등(욕실2)+간접조명(우물천장,신발장)+감성조명(거실,침실1,2,3)+실링팬		4,388	438	438	438	438	438	438	438	1,322		
	바닥재	14-1 기능성륨카펫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14-1, 14-2 중 택 1
		14-2 강화합판마루(광폭)		954	95	95	95	95	95	95	95	289		
	욕실자재	15 600각 포세린 벽타일(욕조 에이프런 포함)+수납장 하부 조명	도기질타일(600×300)	1,124	112	112	112	112	112	112	112	340		-
		16-2 욕실 다기능팬(욕실2)	기본 욕실팬	600	60	60	60	60	60	60	60	180		욕실1,3 미설치
		17-2 [욕실특화]무광수전(세면/샤워겸용, 세면기, 욕조) 및 무광악세서리 (휴지걸이, 수건걸이)+무광코너선반(욕실2)	기본수전(유광)+기본악세서리 (유광)	400	40	40	40	40	40	40	40	120		17-2 선택시 수납기능이 없는 욕조수전이 설치되어 코너선반이 추가됨(욕실1,3제외)
	시스템에어컨	18-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배관만 설치[(거실(스탠드형)+침실1(벽걸이형)]	6,441	644	644	644	644	644	644	644	1,933		18-1, 18-2 중 택 1 ※옵션 선택 시 냉매 매립 없음
		1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 4대)		9,835	983	983	983	983	983	983	983	2,954		

6.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 잔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Ⅱ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 · 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안산신길2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안산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경기도·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10.30)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안산시)	30%	· 공고일 현재 안산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5.10.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산시 거주 ('25.10.30.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경기도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6.04.30.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6.04.30. 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되, 공급세대가 최소물량(3세대 미만)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경기도→타지역 순으로 배정합니다.
※ 안산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안산시 1년 이상 계속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10.30)	① 경기도	50%	·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단, 남는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25.10.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산시 거주 ('25.10.30.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를 포함한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경기도에 우선 배정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6.11.30)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사전청약당첨자 · 기관추천 · 지역균형발전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 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자산보유기준산정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4항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해당 특별공급에 출산특례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215,500천원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d rowspan="2">(건물+토지)</td><td rowspan="2">이하</td><td></td><td>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건 물</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r><td colspan="2">시설물</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
</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r><td>자동차</td><td>45,420천원
이하</td><td colspan="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td></tr>
</table>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부동산(건물+토지)	237,050천원 이하	258,600천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참고
자동차	49,960천원 이하	54,510천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6년식 자동차를 2025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 **소득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노부모부양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생애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최초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신혼부부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배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신생아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배점 (우선공급,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 원]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6,780,387	7,921,982	8,394,287	8,915,637	9,436,987	9,958,33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2,054,021	14,083,523	14,923,176	15,850,021	16,776,866	17,703,7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12,807,397	14,963,743	15,855,875	16,840,647	17,825,420	18,810,19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5,820,902	18,484,624	19,586,669	20,803,152	22,019,636	23,236,1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6,574,279	19,364,844	20,519,367	21,793,779	23,068,190	24,342,602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다자녀·신생아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신청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위 표의 가구원수 적용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Ⅲ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0. 공통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예비배우자 포함)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

저축 사용 제한 등)]

■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계약 동·호수 발생 시에도 변경 불가합니다.**

1. 사전청약 당첨자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금)]**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상속의 경우는 제외)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사전청약 신청 당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②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9)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6.10.30)까지 주택을 소유**한(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으신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 해당지역 전입일~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아래 국외 체류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1)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2)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 불가

(3)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거주기간은 따로 고려하지 않음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9.) 당시의 지역우선공급 기준(안산시 2년 이상, 경기도 2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유지여부,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특별공급 기당첨여부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의 무주택세대구성원(사전청약 공고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 포함)을 기준으로 검증하며, 사전청약 시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에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청약 신청 당시 작성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본청약 모집공고일 기준(2026.10.30.)**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11.09.(월) 10:00 ~ 11.10(화) 17:00 [신청기간 중 야간(17:00~10:00)에도 청약 가능]**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거나 **간편인증 13종**을 이용하여 로그인 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신청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공공분양)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및 주택형(타입)별 선호순위 선택 및 접수 → (접수 후)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확인 → 본청약 신청 취소 시 포기 신청 필요 (청약 일정 확인)

-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신청서 작성 시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형의 모든 주택형(타입)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선택(중복선택 불가)** 해야 합니다. **주택형(타입)은 각 선호순위 순(1순위→2순위→...)으로 우리공사 전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됩니다.**(본청약시 선택가능한 주택형이 1개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 필요)

사업지구	블록	사전청약시 당첨된 주택형	본청약시 선택 가능한 주택타입	발코니 확장 여부
안산신길2	B-1	74A	74A	발코니 확장형
		84	84A,84B,84D	발코니 확장형
		84T	84G,84H,84I	발코니 확장형
		84(복층)	84J	발코니 확장형

- 사전청약 당첨자가 배정된 **주택형(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 기간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포기신청(인증 필요)을 하여야 하며**, 본청약 신청 포기 후에는 취소가 절대 불가합니다. 본청약 신청 포기 시 청약통장은 사용 처리되지 않으며, **해당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금회 공급되는 주택(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타 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확인 : 2026.11.11.(수) 14:00 (LH 청약플러스 → 청약 → 분양주택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 배정 결과 조회)
- 본청약 신청 취소 기간 : 2026.11.12.(목) 10:00 ~ 2026.11.13.(금) 17:00 (LH 청약플러스 → 청약 → 분양주택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 배정 결과 조회 → 포기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는 사전청약 당첨 당시 일반 · 특별공급 당첨에 관계없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일반공급 신청』, 『특별공급 신청』 아님)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위 신청일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본청약 신청을 하셔야하며, 신청하지 않은 물량은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유의사항**

• **중복신청 금지**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11.09.(월)~11.10.(화)**]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복 신청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11.09(월)~10(화)**]에 미신청한 경우와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배정된 주택형(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취소(포기)한 경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해당 본청약에 당첨시 **당첨자발표일[2026.11.30(월)] 이후 사전청약에 사용한 입주자저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시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당첨자**[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로 관리됩니다.**

• **사전청약시 특별공급 당첨자 안내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2.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 제27호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지역균형발전,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지자체(안산시 철거민),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자체(장애인, 지역균형발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등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11.16.~17)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공급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필요 없음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해당 시·도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11.16.(월) 10:00 ~ 11.17.(화) 17:00)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7.10.31.~2026.10.30.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 유의사항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출산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출산특례 내용 참고)**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이 속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단,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남은 물량은 경기도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이 속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단,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남은 물량은 경기도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0명	0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해당없음	0	
무주택 기 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없음	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미거주	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해당없음	0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단,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무관)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하고 25세에 혼인)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3)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25세에 혼인 이후 소유하던 주택을 26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출산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출산특례 참고)**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6.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포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혼인신고일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의 **13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7.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9.10.30.~2026.10.30.에 속한 자)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 불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출산특례 및 혼인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출산특례, 혼인특례 참고)**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점수 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출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본)로 확인합니다.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점수 항목**

가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1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고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해당없음	0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0명	0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주택건설지역(안산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3년 초과 5년 이하	2	
	5년 초과 7년 이하	1	

	7년 초과	0	
바.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 3세 미만)	3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2세 초과 4세 이하(만 5세 미만)	2	
	4세 초과 6세 이하(만 7세 미만)	1	
	해당없음	0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마.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8. 신생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 시작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 유의사항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출산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출산특례 참고)**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점수 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점수 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점수 항목**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1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고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해당없음	0	
나.	미성년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주택건설지역(안산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 '나. 미성년 자녀의 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9.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20페이지 "Ⅱ. 신청기준의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 한정)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 물량**을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 시작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Ⅳ 신청 시 확인사항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인증서 or 간편인증→ 조회기준일 입력→ 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개)를 이용하거나 간편인증 13종으로 로그인 후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2. 전매 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6.11.30)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 · 장애인 · 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20페이지 참조)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11.09.~11.10.)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11.09.~11.10.)**에 미신청한 경우와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배정된 세부주택형(주택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취소한 경우,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 또는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6. 예비입주자 등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본청약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제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담당자는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잔여 동·호수 및 동·호 내역을 LH 청약플러스, 모델하우스 또는 분양사무실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Ⅴ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 사전청약 당첨자	2026.11.09.(월) 10:00 ~ 11.10.(화) 17:00 [신청기간 중 야간(17:00~10:00)에도 청약 가능]	인터넷 신청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지역균형발전,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2026.11.16.(월) 10:00 ~ 11.17.(화) 17:00 [신청기간 중 야간(17:00~10:00)에도 청약 가능]		
일반공급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1순위자), 추첨공급	2026.11.18.(수) (10:00 ~ 17:00)		

※ 본 단지의 경우 KB부동산 웹/앱을 통해서도 청약신청 및 신청내역 결과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접속경로 : KB부동산 웹/앱 접속 → 메뉴 → 공공주택 → LH청약전용관)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타입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26.11.17(화) 오후9시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는 주택형별로 배정 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주택형(타입) 선호순위 선택 기간까지 제출 완료)**

■ **모든 유형(사전청약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 시 인증이 필요하오니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받으시거나 간편인증 13종을 이용하여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인증서를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우리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인터넷 대행접수를 도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신청서 작성 시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형의 모든 주택타입에 대하여 지망을 선택(중복선택 불가) 해야 합니다. 주택타입은 각 선호순위 순(1순위→2순위→...)으로 우리 공사 전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가 배정된 주택형(주택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 기간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포기신청(인증서 필요) 하여야 하며, 본청약 신청 포기 후에는 취소가 절대 불가합니다. 본청약 신청 포기 시 청약통장은 사용 처리되지 않으며, 해당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금회 공급되는 주택(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타 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는 각 주택형(주택타입)별로 배정 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주택타입)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주택타입) 선호순위 선택 기간까지 제출 완료)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순위, 납입인정금액, (당첨자 확정 후)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기관에 필수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청약접수 완료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Ⅵ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PC인터넷 · 모바일 신청 (사전청약 당첨자, 기관추천 등,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거나 간편인증 13종을 이용하여 로그인 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당첨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공공분양)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및 주택형(타입)별 선호순위 선택 및 접수 → (접수 후)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발표 확인 → 본청약 신청 취소 시 포기 신청 필요 (청약 일정 확인)**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or 간편인증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특별공급신청(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or 간편인증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일반공급신청(신생아우선공급/우선공급(1순위자)/추첨공급)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사전청약 당첨자) 2026.11.09.(월). 10:00 ~ 2026.11.10.(화). 17:00, (특별공급) 2026.11.16.(월). 10:00 ~ 2026.11.17.(화) 17:00, (일반공급) 2026.11.18.(수)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가 배정된 주택형(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 기간 (2026.11.12.(목) 10:00 ~ 2026.11.13.(금) 17:00)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포기신청(인증 필요)을 하여야 합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안산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엄격하게 처리**하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방문제출	선택품목 결정 (온라인)	계약체결(당첨자)
'26.11.30.(월) 17:00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6.12.04.(금) ~ 12.08.(화) 10:00~16:00	'27.03.04(목) 10:00 ~ 03.05(금) 17:00	(전자) '27.03.15.(월) ~ 03.16.(화) 10:00~16:00 (현장) '27.03.17.(수) ~ 03.18.(목) 10:00~16:00
• **(현장)**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체결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금곡동 1149 (LH 수원 주택전시관 2관) • **(온라인-선택품목 결정)** - PC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 결정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 결정 • **(온라인-전자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서류제출은 혼잡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당첨자 발표 이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청약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2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6.12.04.(금) ~ 2026.12.08.(화)]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이후 발급본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 **방문 제출[2026.12.04.(금) ~ 2026.12.08.(화) 10:00~16:00], 주택전시관(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LH 수원 주택전시관 2관)에 방문하여 제출**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원본)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 없이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②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④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⑥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 없이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 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②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④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⑥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⑦ 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⑧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 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⑨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 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⑩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등 양육사실 확인
	○	⑪ 통장사본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급여 수령 내역 확인
	○	⑫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⑬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	⑭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재외국민 배우자는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을 제출
	○	⑮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23.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⑯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특별공급(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지역균형발전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당첨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 없이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지역균형 발전 특별공급)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②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④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 가 있어 출산특례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⑥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⑦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⑧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 전 · 후 기록 모두 제출
		○	⑩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제2호에 따라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재외국민 배우자는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을 제출
		○	⑪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⑫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⑬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②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함하여 발급 • '08.1.1. 전에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④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의「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만 해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제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③ 기본증명서	자녀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⑦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전 재당첨, 주택소유사실 여부 확인
		○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9>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9>**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신생아 특별공급	○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전 당첨 여부 확인
		○	③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세 미만 자녀를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④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⑤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세 미만 자녀를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⑦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양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수령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⑧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등 확인
	○		⑨ 통장사본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급여 수령 내역 확인

<표9>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이후 발급본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현장수납 불가]** * 주택가격 계약금 + 발코니확장비용 계약금,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 신분증은 사본 복사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 반드시 지참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④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양식 다운로드 : LH 청약플러스-청약-알려드려요-자료실)
	전자계약	① 계약자 본인 명의 휴대폰
		② 계약자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양식 다운로드 : LH청약플러스-청약-알려드려요-자료실
	② 당첨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본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원본)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본에 한함)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 신분증은 사본 복사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 반드시 지참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 신분증은 사본 복사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 반드시 지참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신분증 등)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 신분증은 사본 복사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 반드시 지참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10:00~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절차



- 거래가격의 경우 일부 평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 마이너스옵션 선택,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시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계약금(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금 포함)]을 공제하오니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법」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2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 따라서, **현장계약 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계약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제공대상

-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의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주 방	좌식 씽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욕실 1개소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높낮이 조절 세면기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야간센서등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장애인 ·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의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현장계약 체결기간 [2027.03.17.(수) ~ 2027.03.18.(목) (10:00~16:00)] 내 신청**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신분증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여건**

- 청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국토교통부고시(2026-408호, 2026.07.31.)로 승인고시된 "안산 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계획,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변경, 매장유산, 오염토양발생 등 현장여건 변경에 따라 사업준공 등 추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내에는 공공분양, 공공분양(신혼희망),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신혼희망), 민간분양, 민간임대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택 유형 및 공급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공공청사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내 초등학교는 2029년 하반기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나, 향후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에 따라 개교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본 지구 내 중학교는 현재 학교 설립 여부, 설립 규모 및 개교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블록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군 또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본 지구 북측으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가 접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반경 약 2km 거리에 반월특수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지구 남측으로 수도권 전철 4호선 신길온천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지구 서측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역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지구 남측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중앙대로 연결램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지구 동남측 초입부에 그랜드빌 앞 회전교차로 확장사업(1→2차로)이 교통영향평가 지구외 교통개선대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지구 북측으로 반경 3km내 평택시흥고속도로 군자JC와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지구 남측으로 반경 2km내 평택시흥고속도로 남안산 I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지구 내 홍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저류지(2개소) 등이 계획되어 있고 해당 시설의 위치, 규모 등은 제영향평가 및 인·허가 변경,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에 위치한 저류시설(2개소)은 우수 저감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평상시 건천 상태로 유지되고, 우천 시에는 저류지에 우수가 유입됩니다. 지형 및 일기상황에 따라 바닥 일부 수분 고임 및 잡풀 생육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퇴적물이나 수위 변화에 따른 습기, 해충 또는 일시적인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내 ·외 도로의 신설·확장 등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지자체 등 협의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내 ·외 도로 일부구간에 방음벽이 계획되어 있으며, 경관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내 빗물처리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제기천 하천변 수변공원에 오수중계펌프장 신설이 예정되어 있어, 해당 시설물의 운영에 따라 악취, 해충, 미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위치 및 규모 등은 관련 계획, 인·허가 변경, 제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 도로(황고개로, 중앙대로 연결램프 등)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내 상업시설, 업무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등의 용지는 정부정책, 관계기관의 수요 또는 매입계획이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내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시 상담창구 및 계약 전 해당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로등, 공원등,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지구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 통신, 수도, 가스, 지역난방, 오수중계펌프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및 시흥거모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시설 및 구조물 계획을 확인 후 분양에 응해야 하며,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지구는 문화재 조사대상지로서, 문화재 조사 진행 중 유구 발견 등에 따라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조성공사, 공원녹지 조경공사,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지구 내 송전선로 케이블헤드(C/H) 2개소가 지구 서측 및 남측에 계획되어 있으며, 철탑설치로 경관 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위치 및 주변 여건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충분히 확인·인지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후 해당 시설의 위치 및 설치·운영에 따른 사항을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 남측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용지, 동남측에는 공동주택용지(C-1BL) 서측에는 공동주택용지(B-2BL)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 북측으로는 시흥거모지구가 접해 있으며 단지 남측 200m에 근린공원, 서북측에는 완충녹지, 북측에는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용지(A-10BL)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이후에도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등 인허가 변경, 관계기관 협의 결과, 현장여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 및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인접 도로 및 진출입구에 노상 시설물(전력PAD, 가로등, CCTV, 소화전 등),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휀스 등은 관할 지자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보행 및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단지 공원·녹지·도로와 인접한 주거동은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공원·녹지 등과 인접한 주거동은 소음, 악취, 벌레 등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도로와 인접한 동은 일부 저층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계획 변경 시 공원녹지, 버스정류장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 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근린공원, 보행자도로) 간 레벨차이로 인한 단차발생 시 아파트 단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차 부위는 조경석, 옹벽 또는 법면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외 및 인접 경계부의 담장 및 구조물은 추후 토목공사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마감처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외부 도로 및 진출입구 개설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따라 각종 안내표지판(대형 포함),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휀스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 현재 주상복합용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으로 변경검토중으로,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외부 도로·공원·녹지·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일체는 지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입주 후까지 완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LH 및 시공사에 각종 이의제기

및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 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단지) 외부 [서측, 남서측] 인근에는 송전선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철탑이 육안으로 보일 수 있고 이로 인한 조망 저해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중화 공사 일정 및 임시철탑 철거 시기는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지하1층 2.7m, 지하2층 2.3m이며 택배차량은 지하1층으로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 설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단,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총 주차대수 (세대당)	구분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506대 (1.3대)	계	-	-	-	457대	21대	26대	2대	-	-	-	-	-
	1층	-	-	-	194대	21대	26대	2대	-	-	-	-	-
	2층	-	-	-	263대	-	-	-	-	-	-	-	-

* 장애인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에 설치 예정인 전기차 충전기 18대 중 1대는 급속충전기, 17대는 완속충전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충전설비의 기존 설치 위치 이동 및 추가 설치는 불가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경로당 등),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 피트니스센터에는 운동기구가 제공될 예정이며 설계 및 제공되는 운동기구(의자, 소파 등 이동식가구 등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음)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안은 실 입주 후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본 단지는 부력 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며, 공용 전기요금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 가까이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 제연팬, 외기 취입구, 발전기 배기탑, 주차장 환기팬, 유인팬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 시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등이 일부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분진,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에서는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 예정입니다. (단, 일부 세대에 설치되는 급수, 급탕 계량기의 동파방지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은 해당 세대 전기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층 및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 보호 설비가 설치됩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운영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해당 비용(전기요금 등) 부과 및 운영 방법 등은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일부동 지붕층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 모듈 사양에 따라 각 동별 설치 위치 및 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난간, 태양광 설비 등 구조물(시설물)로 인해 강풍 및 우천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상가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전력기기(지중개폐기 및 변압기)가 단지 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인접 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되며, 일부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내부, 각 동 출입구 등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방범 CCTV 설치로 인하여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사생활 침해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에서 홈네트워크 시스템 연동을 위해서는 고정IP가 필요하며, 공용 통신요금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주차유도와 주차가능공간 및 차량주차위치 확인이 가능한 AI 주차유도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본 단지는 얼굴인식 공동현관기(로비폰)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얼굴인식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07동에 관리사무소, 방재실 및 MDF실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동(101동, 102동, 107동)에 소음 및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6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수신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인근 지하층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위치하고 발전기실 상부에 환기구(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에 시야차폐가 발생할 수 있고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열풍 및 매연이 일부 세대와 보행자 통로주변으로 전달되어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고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 차단기 설치 위치 및 버스정차 구역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무인택배 시스템은 각동 지하1층, 동별로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고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서비스 안테나가 지하층 및 지붕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단, 설치장소 및 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절창고는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동마다 위치가 다르게 설치됩니다. 또한 총 세대수 미만으로 설치되어 세대별 단독이용이 불가하며, 온·습도에 민감한 물품은 보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절창고의 환기.결로방지를 위한 장비가동(팬,제습기)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 열교환기실, 동지하에 집수정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필로티, 지상1층에 설치되는 부대시설(경로당, 작은도서관, 근린생활시설 등)과 인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 불편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7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상가)이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의 배기팬 및 실외기 등이 다수 설치되어 해당 시설물로 인하여 소음, 냄새 등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시설은 입주 전과 후 한시적으로 입주지원시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별도의 생활자원보관소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동의 생활자원보관소를 공유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채광창, 생활자원보관소 등은 각 동 주변에 설치될 예정이고, 일부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분진,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층 세대는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동·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사 전 반드시 이사업체의 현장 확인을 통해 사다리차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부지는 상가 이용자와 차량의 통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문주의 형태 및 마감, 주동 저층부 외부마감은 설계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시공계획(조경, 식재, 포장, 시설물 등 일체) 및 추진 일정 등은 당사 디자인특화계획 및 시공여건, 인허가 등에 따라 디자인, 형태, 크기, 색채,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동 전면, 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이나 민원 등의 사유로 조경수의 추가 식재나 식재 이동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단지 내외부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는 각 동별 거리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생활자원보관소의 디자인 및 위치를 각 세대의 단순 미관사항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소방 관련 이동식 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각 동 일부 전·후면 조경 공간에는 교목, 관목, 등의 식재가 불가능하며, 식재 제한 및 시설물 설치 불가에 따른 환경권,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층세대는 계약 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위치변경 요청 불가함.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 및 소방관련 사용승인 조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 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 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으로 발생 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승강로 및 권상기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 설비인 한전 PAD 스위치 및 PAD 변압기가 단지 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인접 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단,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84G, H, I 타입 관련 안내] 본 단지는 입면특화를 위해 전면도로에 면한 101, 107동의 84G, H, I 타입에 아래층의 지붕에 해당하는 별도의 외부공간(테라스)이 설계되어 있으나, 해당 공간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테라스 면적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정 세대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임의로 증축, 개축, 지붕 설치 등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테라스 구조상 세대 내부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므로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해당 세대의 협조 없이는 다른 세대의 사용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해당 세대는 테라스의 배수구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당 공간의 법적 성격과 사용제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 입주자 간 분쟁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테라스의 사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반영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84G, H, I 타입 관련 안내] 테라스는 2개층 단위로 설계되어 있어, 벽면에 상층세대의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84G, H, I 타입 관련 안내] 테라스는 공용부에 속하는 관리 대상으로 별도 조명기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84G, H, I 타입 관련 안내] 세대 내 파우더룸 천장 속으로 상부층 배수 배관이 시공되어 천장고가 2.2m로 조정(기본 2.3m)되며, 배관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침실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84G, H, I 타입 관련 안내] 부부욕실이 아닌 파우더룸에 하부장 매립형 세면대가 설치되며, 하부장 내부에는 세면기볼, 배관이 노출되어 공간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감도 등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청약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하주차장 제연휀룸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서비스안테나를 지하층, 데크층 및 옥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욕실 등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평형은 세탁기와 건조기 병렬 배치시 다용도실 출입문과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평형은 세탁기와 건조기 직렬 배치시 선반과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아일랜드 포함)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옵션 중 아일랜드장은 고정형으로 설치됩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세대 내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모델하우스,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와 다소 상이한 자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에 가스배관, 자동소화장치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창호 외부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일부평형의 2층부터 최상층까지의 침실1 실외기실에는 아래층 세대로 탈출가능한 하향식피난구가 시공될 예정으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팸플릿 확인 요망)
- 일부평형은 3층(하부 필로티 및 부대시설 세대)에 한해 침실1 발코니 내에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84J타입은 3층 이상 전세대에 완강기 설치)
-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 상부에 전열교환기가 하향식 피난구 위치에 따라 층별 교차 설치됩니다.
- 실외기실의 하향식피난구는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자재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상부 세대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 전개를 위한 공간 확보 및 소방법 준수를 위해 물건 적치가 불가능합니다.
-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세대아트월부위는 경량벽체로 별도 보강 하여 경량벽체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전시품임)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임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 발코니 및 실외기실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되고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됩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가스쿡탑은 가스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사이버 견본주택 전시품과 실제 시공모델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반침가구, 조명기구, 월패드,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도꼭지(세탁, 손빨래, 물뿌리기)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다용도실 및 실외기실은 비난방 공간이므로 겨울철에 창문개방, 에어컨 실외기 그릴 개방 등에 의한 외기 유입으로 수전류 등에 동결,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실외기실에 우천시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한 관리(청소 등)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악세사리류 등)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디자인(수전, 액세서리류) 옵션 선택 시 선반 및 수납 기능이 없지만 디자인이 특화된 샤워수전, 욕조수전이 시공되며, 코너 선반이 추가로 설치됨(욕실별 각 1개)
- 세면/샤워 겸용수전이 설치되는 일부타입 욕실은 기본, 옵션세대 공통으로 수납기능이 없는 안마헤드형 샤워헤드가 설치되며 옵션 선택시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다용도실 및 실외기실 등에 관련 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시스템에어컨(선택품목), 실링팬(선택품목), 드레스룸 제습기(기본품목)은 무선리모컨을 통하여 작동되며, 거실 월패드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품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이후, 입주민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시스템에어컨 추가 설치 요청 등은 불가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 및 침실1에 매립되는 에어컨용 냉매 배관은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침실1의 에어컨 실내기 매립 박스는 액자형 기준으로 설치되므로 가로형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형 박스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 및 외벽에 직면한 벽에 설치되는 거실 및 침실1에 매립되는 에어컨 냉매배관 박스는 단열재 후면에 설치되어 에어컨 설치를 위하여 단열재를 탈거하여 배관공사를 진행하는 입주자는 결로방지를 위해 배관설치 후 밀실히 단열 설치를 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결로 및 기타하자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세대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되며 일부 세대는 발코니에 설치될 수 있고, 환기유니트 장비는 사양이 바뀔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급,배출구)는 천장에 시공되며 타입별로 급기, 배기 개수와 위치는 상이할 수있으며, 작동시 소음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실내환기시스템 자동운전시 공기질 측정을 위한 센서는 침실1또는 거실에 설치됩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됩니다.
- 세대욕실 오배수배관은 층하배관 공법으로, 욕실천정내부에는 상부층 세대의 오배수 배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부욕실이 아닌 파우더룸에 세면대가 설치되는 일부타입은 상부층 배수배관이 파우더룸 천장내에 위치하여 침실에 소음이 전달될수 있으며, 배관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추가되고 천장고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상하부층 평면이 다른 일부타입은 욕실 및 발코니 외 공간 천장내부에 상부층 배수배관이 위치하여 침실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배관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추가되고 천장고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욕실팬 작동 시 냄새 역류방지를 위한 전동댐퍼가 연동하여 작동하므로 댐퍼작동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 배기는 당해층 배기 방식이 적용되며, 창문개방시 해당층 및 상하부층의 배출공기가 내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후드장 상부는 수납이 제한됩니다.
- 발코니(세탁기실 및 에어컨 실외기실 등)는 대용량의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및 건조기 등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사이즈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타입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배기장치는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홀이 설치됩니다.
- 소방 관련법에 따라 제연설비는 엘리베이터 전실에 제연급기그릴이 설치되며,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 상부 및 외부에 냉·난방 실외기 및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용시 인근 동에 소음 및 진동, 온·냉풍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침실1 발코니에 자동빨래건조대가 설치됩니다(복층형 세대는 침실2 발코니에 설치됩니다.)
- 자동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실은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되지 않으며, 내장된 조명은 리모컨으로 조작됩니다.
- 자동빨래건조대 사용 시 실외기실 문 및 주변 시설물(입상배관 등)과 일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빨래 거치 후 다시 상승하여 문개폐시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합니다.
- 시공과정 중 발코니 내부 공간을 감안하여 자동빨래건조대 전개 시 최대 길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루버창을 열지 않고 실외기 가동 시 냉방기능 저하 등 작동 오류 및 급격한 온도상승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될 수 있어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쿡탑(옵션품목 포함)과 가스차단밸브 및 배관사이 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냄비 사용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상부장 하단 가스차단밸브 이후 가스쿡탑과의 가스배관 연결은 별도로 도시가스 사용신청을 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옵션품목 중 인덕션 3구를 선택하는 세대에도 가스차단밸브까지 가스배관이 시공됩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감압밸브를 거쳐 절수형 양변기 및 수전에 최적화 된 수압으로 각 세대에 공급되기 때문에 수압 및 세정력이 다소 약할 수 있으며, 임의로 밸브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설비의 환기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는 제품설명서에 따라 필터를 점검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
- 침실 등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타일 및 아트월 나누기(거실, 욕실, 주방 등)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거실 스마트 세대단말기(월패드),욕실 콘센트 설치부분에 타일 나누기 줄눈이 간섭될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에 일반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전원용 콘센트만 설치됩니다.
- 실외기실에는 일반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만 설치됩니다.
- 세대 시스템 에어컨(옵션)은 무선 리모콘을 통해 작동되며 세대 내 스마트 세대단말기(월패드)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침실1에 실내기 전원용 콘센트가 설치되며 옵션 선택 시 침실1에 실내기 전원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은 주방, 다용도실, 침실 및 거실의 창호 측면 천장부위 각 1개소가 설치되며, 그 외 층의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 천장부에 1개소가 설치됩니다.(최상층 다용도실 부위는 벽부형)
- 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설치를 위해 우물천장 구조가 변경되어 시공됩니다.
- 식탁 및 아일랜드장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 및 아일랜드장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위치 이동은 불가합니다.
- 전체 세대의 실외기실(대피공간)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됩니다.
- 최상층 세대 발코니 및 실외기실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되고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발코니) 및 벽부형(실외기실)으로 설치됩니다.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됩니다.
- 홈네트워크시스템 스마트 세대단말기(월패드)는 방범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동작감지기), 제어서비스(쿡탑차단, 거실 및 각 침실 조명, 난방온도, 디지털도어록), 대기전력 차단서비스(대기전력 차단콘센트, IoT콘센트),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통제시스템)를 제공합니다.
- 거실에 설치되는 스마트 세대단말기(월패드)는 네트워크 스위치와 환기·온도조절기 기능 통합형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하향식피난구가 개방이 될 때 해당 세대와 직하층 세대는 세대단말기(월패드)에서 알림이 울립니다.
- 84J 타입에는 각 층에 월패드가 설치되며, 미러링 기능으로 구현 및 작동됩니다.
- 스마트홈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등, 현관창고등 제외), 엘리베이터 호출 및 쿡탑열원 차단 기능을 하며, 화면에는 현재시간 및 외부날씨(온도, 미세먼지정보)가 표현됩니다.(외부날씨 - 온도, 미세먼지정보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고정IP가 필요하며, 공용 통신요금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음)
 [생활정보기의 쿡탑차단 기능 명칭은 제품 공용 사양에 따라 '가스차단'으로 표기되어 납품·설치됩니다. 다만, 인덕션 옵션 선택 세대는 해당 기능이 가스밸브 차단이 아닌 인덕션 전원 차단 기능으로 적용됩니다.]
- 세대분전반은 세대 타입에 따라 침실2 또는 침실3 도어 후면 벽체에 매립 설치되어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단자함은 세대 타입에 따라 팬트리 내 또는 침실2,3 도어 후면 벽체에 매립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위치, 사양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주택전시관용 소방시설로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중문, 드레스룸, 팬트리 옵션 선택 시 소방법에 따라 해당 구획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며, 기본형의 경우 현관 등 위치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옵션 가구 조명용 콘센트는 스위치 작동에 따라 동작하며, 조명기구 기준으로 용량이 산정되므로 본 용도 외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 안산신길2지구 내 유초중고 설립계획

학교	위치	학교명(가칭)	개교시기	비고
초등학교	초1	(가칭)안산신길1초	2029.09.(예정)	병설유 포함
중학교	중1	(가칭)안산신길2중	2031년 이후	-
고등학교	설립계획 없음			

※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기상상황,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가칭)학교명은 학교설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기재된 학교명은 최종 교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학교 개교 이전 입주하는 학생은 인근 기존 학교에 한시적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 후 일정 기간 통학거리 및 통학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배치 학교, 통학방법 및 통학지원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 시점의 학생배치 여건과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안산교육지원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용지가 계획되어 있거나 학교설립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라도 학교용지의 지정만으로 학교설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투자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 설립이 확정되지 않은 학교는 향후 학생 수, 공공주택 입주시기, 인근학교 배치 여건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변경·보류 및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가 설립·운영되는 경우 학교 인접 단지는 학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자는 단지와 학교용지의 위치 및 주변 여건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의 입주 유아는 단원4 취학권역 내 유치원 등에 지원할 수 있으며, 유치원 입학은 해당연도 유치원별 모집계획 및 모집정원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치원 취학권역 및 유아 배치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유아 수 및 유치원별 수용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입주 전년도에 확정되므로 입주자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의 통학구역 결정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는 입주 전년도에 확정되므로 입주자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결정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의 입주 고등학생은 입학 해당 연도의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방안 등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청약자는 입주 및 진학 시점의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학생배정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대지지분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와 준공 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대지경계 및 면적은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정리될 수 있습니다.
- 확정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또는 대지경계의 변경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 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 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분양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모형은 공급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폐기할 예정입니다.
- 입주일(잔금 완납 및 열쇠를 수령하여 입주절차를 완료한 날) 이전에는 이사 또는 세대 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 지정된 일자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내력벽, 공용부분, 발코니, 실외기실, 피난시설 및 기타 건축물의 구조 또는 용도를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하여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불법 구조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복구, 하자, 안전사고 및 민원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행위자에게 있으며, 계약상 불이익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
구조 관련 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환경 관련 등급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생활 환경 등급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
	방범안전 콘텐츠	★★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 용
외벽(직접면)	적 용
외벽(간접면)	적 용
창호(직접면)	적 용
창호(간접면)	적 용
지붕	적 용
바닥(직접면)	적 용
바닥(간접면)	적 용
바닥(층간바닥)	적 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 용
일괄소등스위치	적 용
고효율LED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구 분	적용 여부
절수설비	적 용
고효율설비	적 용

7.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주택법 제5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75,306,781
			기간이자	3,722,669
			필요적 경비	-
			그 밖의 비용	78,731
			계	79,108,182
건축비	공사비	토목	토공사	2,691,730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
			석축공사	-
			우·오수공사	464,465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14,313
			도로포장공사	231,065
			교통안전시설물공사	21,793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4,858,673
			부대시설공사	115,511
			계	8,397,550
		건축	공통가설공사	2,400,774
			가시설물공사	4,233,929
			지정 및 기초공사	386,613
			철골공사	54,918
			철근콘크리트 공사	24,834,512
			용접공사	-
			조적공사	1,738,257
			미장공사	3,238,923
			단열공사	3,177,838
			방수·방습공사	1,749,563
			목공사	4,122,028
			가구공사	400,306
			금속공사	483,307
			지붕 및 홈통공사	183,550
			창호공사	5,388,531
			유리공사	1,111,885
			타일공사	1,854,519
			돌공사	2,938,636
			도장공사	1,705,894
			도배공사	948,156
			수장공사	1,226,436
			주방용구공사	-
			잡공사 (그 밖의 건축공사)	862,522
			계	63,041,095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1,154,748
			급탕설비공사	830,735
			오배수설비공사	4,556,185
			위생기구설비공사	2,094,279
			난방설비공사	3,376,775
			가스설비공사	593,730
			자동제어설비공사	-
			특수설비공사	79,493
			공조설비공사	3,473,979
			계	16,159,925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7,630,511
			정보통신공사	4,135,053
			소방설비공사	10,091,214
			승강기공사	1,354,825
			계	23,211,602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4,245,052
			이윤	8,022,538
			계	12,267,590
	간접비		설계비	1,634,300
			감리비	1,126,177
			일반분양시설 경비	930,768
			분담금 및 부담금	840,240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3,700,978
			계	8,232,461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25,030,005
합계				235,448,411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액)	가. 퍼스트 감정평가법인	나. 현대 감정평가법인
75,306,781천원	74,890,722천원	75,722,841천원

8.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단위 : 천원]

항 목			금 액
택지비 가산비	방음시설 설치비		-
	기간이자		3,722,669
	기타비용		78,731
	계		3,801,400
건축비 가산비	법정초과복리시설설치비용		2,134,176
	공동주택성능등급 가산비		981,817
	바닥충격음저감주택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홈네트워크	2,648,482
		에어컨냉매배관	487,877
		초고속통신특등급	351,125
		기계환기설비	889,492
	친환경주택건설비용		2,418,408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전기자동차충전시설	56,432
		기타비용	112,101
	지하주차장층고증가추가비용		218,503
	설계비		196,116
	감리비		4,818,507
	기초지반공사비	말뚝박기공사비	294,800
		암석지반공사비	1,543,385
		흙막이및차수벽공사비	3,698,318
		지하공사특수공법	-
	안전관리비		674,557
	사업승인부가조건 가산비		3,505,911
	계		25,030,005

9.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안산신길2 B-1BL	한국토지주택공사 (135-82-14276)	동부건설(주)(201-81-45685) ㈜발해(307-81-42123) ㈜만훈(511-81-15472) ㈜동서(221-81-20510)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정일씨엠 ㈜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천진종합건축사사무소(주)

10. 주택전시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안산신길2 B-1BL 주택전시관



■ **위치안내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LH 수원 주택전시관(2관)**

■ **오시는 길**

- 버스노선 : 한양수자인파크원아파트.자목마을입구 / 호매실쌍용아파트 하차
- 일반버스 : 9, 9-1, 11-1, 13, 13-1, 13-4, 13-5, 15-1, 19, 61, 62-1, 99
- 광역버스 : 7800, 8000

■ **운영기간**

• **(전시관관람기간)**

대 상	구 분	관람기간	기 타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관람** (일반고객 관람 불가)	**'26.10.30.(금)** (13:00~17:00) **'26.10.31.(토)** (10:00~17:00)	* 기간 내 주말, 공휴일 관람 가능 * 관람 및 상담 시 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차공간 협소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일반고객 **(사전청약 당첨자 포함)**	**일반관람**	**'26.11.01.(일) ~** **11.07.(토)** (10:00~17:00)	

• **(서류접수기간) '26.12.04.(금)~12.08.(화) (10:00~16:00)**

• **(현장계약 체결기간) '27.03.17.(수)~03.18.(목) (10:00~16:00)**

사이버 견본주택 (PC · 모바일)	분양문의
■ **주 소** : www.lhasg2-b1.co.kr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수원 주택전시관 : 031-297-0311**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LH 경기남부지역본부